

研究報告書

第68輯(2012. 3)

지방세 과세표준 양성화 및 납세절차상의 편의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韓國稅務士會 附設

韓 國 租 稅 研 究 所

◆ 研究責任者 ◆

정 지 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共同研究者 ◆

정 재 현 (동아대학교 교수)

목 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제2장 지방세제의 현황과 문제점

5

제1절 지방세 과세현황	5
1. 지방세의 과세권	5
2. 지방세 세목과 과세권 분할	6
제2절 지방세제의 문제점	13
1.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	13
2. 체납에 따른 지방재정의 악화	16
3.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의 문제점	21
4.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의 문제점	25
5. 취득가액 과세표준 산정의 문제	28

제3장 지방세 과세표준 양성화 방안

30

제1절 지방세 과세표준의 현황	30
1. 지방세 과세표준의 의의	32
2. 시가 표준액의 의의	33
3. 지방세 과세표준과 관련된 현행 규정	34
4. 국세의 과세표준과 관련된 현행 규정	40
제2절 주요국의 지방세 과세표준 현황	44
1. 미 국	44

2. 일 본	45
3. 영 국	46
제3절 지방세 과세표준의 문제점과 양성화방안	47
1. 과세표준 결정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7
2. 시가표준액 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9
3. 사실상 취득가액 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4
4. 과세표준 결정의 장기적 개선방안.....	59
 제4장 지방세 온라인 수납시스템 개선방안	62
제1절 지방세 수납시스템의 연혁 및 현황	63
1. 지방세 수납시스템의 연혁	63
2. 지방세 납부시스템의 현황.....	64
3. 온라인 수납매체의 종류	69
제2절 지방세 납부시스템 개선의 효과.....	73
제3절 온라인 납부시스템 비교	74
1. 서울특별시 인터넷 납부시스템 이택스(ETAX)	74
2. 국세 통합 신고·납부 시스템 홈택스(HomeTAX)	77
제4절 온라인 납부시스템에 대한 이용자 인식과 개선방안.....	82
1. 지방세 납부체계 선진화 관련 만족도	82
2. 납부시스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86
 제5장 요약 및 정책제언	92
 ☐ 참 고 문 헌 ☐	98

〈표 차 례〉

〈표 1〉 현행 지방세 체계	6
〈표 2〉 법체계의 개편	8
〈표 3〉 지방세 세목체계의 간소화	9
〈표 4〉 국세 및 지방세의 비중	14
〈표 5〉 지방세 신장 추세	14
〈표 6〉 조세총액 중 지방세 비중 국제비교	15
〈표 7〉 지방세 세목별 징수실적	17
〈표 8〉 지방세 세목별 징수율	18
〈표 9〉 지방세 체납액 현황	20
〈표 10〉 세목별 지방세 비과세 · 감면 현황	22
〈표 11〉 사회복지 지원 등을 위한 감면(지방세법)	23
〈표 12〉 고지방식별 현황(2009년 기준)	64
〈표 13〉 납부방식별 현황(2009년 기준)	65
〈표 14〉 납세자의 수수료 부담	70
〈표 15〉 연간 비용절감효과 추계내역(2009년)	73
〈표 16〉 국세 총납부 대비 전자납부 현황	79
〈표 17〉 연말정산 간소화 만족도	80
〈표 18〉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편리 항목	81
〈표 19〉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불만족 항목	81

〈그림 차례〉

〈그림 1〉 온라인납부제의 개요	66
〈그림 2〉 지방세 납부체계 선진화 전후 비교	67
〈그림 3〉 국세 전자납부 건수(비율) 추이	78
〈그림 4〉 위택스 이용 서비스 조사	89
〈그림 5〉 위택스 주요 신고·납부 세목	90
〈그림 6〉 위택스 세무정보 제공 만족도	91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조세정책은 경기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었을 경우에는 보유관련 세제와 양도관련 세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세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를 반복하여 왔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정책과 연계된 부동산 관련 조세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세제상 부동산과 관련된 조세는 국세에서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가 있으며, 취득과 보유관련 세제는 대부분 지방세로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와 관련하여 조세에서 지방세에 특히 주목하게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정책당국은 부동산 보유과세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대폭적인 개편을 진행하여 왔다. 특히 2005년에는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하여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였으며, 지방세로는 종전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합산하여 재산세로 재설계하였다. 이후 2008년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한 위헌결정과 거주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부동산 보유과세의 세부담에 큰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취득세의 경우 매매, 교환 등 실제의 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에 근거하여 과세표준의 산출이 가능하지만, 대형 건축물의 신축으로 인한 취득과 같이 원시취득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계산이 전문적이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납세자

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지방세의 잦은 개정으로 인하여 복잡하고 난해한 체계를 가지게 되어 과다한 납세비용과 징세비용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세수에 비하여 세목수가 많고 동일한 세원에 대하여 중복하여 과세된다는 문제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최근 종전에 지방세에 관한 모든 내용을 지방세법에 규정하고 있던 것을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의 3개의 법으로 분법하였으며, 기존 16개의 세목을 11개로 간소화하였고,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새롭게 도입되어 지방세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와 같이 지방세제의 대폭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방세법에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즉, 법체계의 간소화와 세목의 통합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지방세제의 고유한 문제점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와 관련하여 시급한 점은 과세표준의 양성화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지방세의 과세표준 양성화와 납세자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국세보다 그 중요성이 결여된 점도 있지만, 지방세 운용이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과세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관된 과세정책이 실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행정안전부가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있지만, 대체로 지방세법 등의 개정에 관여할 뿐 각 지자체의 정책을 강력하게 감시·감독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과세표준의 양성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악화를 막기 위하여 반드시 논의하여야 할 부분이다. 다만, 모든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관련된 언급을 하는 것 보다는 주요 세목인 취득세와 재산세를 위주로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과세시스템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납세자의 활용방안에 대

하여 납세편의적인 측면에서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지방세와 관련된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본 연구의 필요성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세표준의 양성화 방안을 통하여 지방세법을 개정하고, 이로 인한 지방세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둘째, 대형 건축물의 신축과 같은 원시취득과 간주취득에 있어서 취득가액의 계산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이에 대한 보안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각 지자체별 과세운영체계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납세자의 편의성을 이끌어 납세협력비용의 축소가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새로이 개편된 지방세법 체계하에서도 지방세의 세목은 여전히 복잡하고 여러 세목으로 분산되어 있다. 지방세의 세목을 중요성에 따라 분류할 수는 없지만 부동산에 관한 세제의 관심에 중점을 두어 본 연구의 범위를 한정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모든 세목에 대한 과세표준을 언급하는 것보다는 부동산 보유와 관련된 세목에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납세자의 신고·납부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도 신고와 납부절차의 측면에서 다룰 수 있는 개선 방안이 다수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신고와 납부 절차에 대한 언급보다는 최근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온라인 납부절차에 한정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중점적으로 온라인 납부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목적으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그 유용성이 증대되고 있는

4 제1장 서론

국세와 지방세의 온라인 납부 절차의 측면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 제도를 검토하고, 선행 연구들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지방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법과 관련하여 각 세목별 과세방법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 간의 과세운영 현황을 점검하여 과세표준의 양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둘째, 취득시 실제 취득가액을 과세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알 수 없는 경우 대형 건축물의 원시취득이나 간주취득과 같이 취득비용의 산출이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안점을 제시한다.

셋째,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과세시스템의 운영현황을 파악하여 납세자의 측면에서 편의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 지방세제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지방세제의 현황

1. 지방세의 과세권

지방세¹⁾의 과세근거는 국세와 같이 헌법 제59조의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 조세법률주의의 표현과 아울러 헌법 제38조의 납세의 의무를 규정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는 헌법상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지방세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의 과세권을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 제1항의 규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그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하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정법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과 입법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1) 과세주체에 따른 분류에 따라 조세를 분류할 경우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할 수 있고, ‘지방세’는 다시 광역자치단체 세목인 ‘도세’와 기초자치단체 세목인 ‘시·군·구세’로 분류할 수 있다.

〈표 1〉 현행 지방세 체계

특별시·광역시		도세	
시세	구세	도세	군세
① 취득세 ② 주민세 ③ 담배소비세 ④ 레저세 ⑤ 자동차세 ⑥ 지방소득세 ⑦ 지방소비세(①지역자원시설세, ②지방교육세)	① 재산세 ②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주민세(재산분)* *광역시에만 해당	① 취득세 ② 등록면허세 ③ 레저세 ④ 지방소비세(①지역자원시설세, ②지방교육세)	① 재산세 ② 주민세 ③ 자동차세 ④ 담배소비세 ⑤ 지방소득세

2. 지방세 세목과 과세권 분할

가. 지방세법 체계와 세목의 변화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법은 법체계와 세목체계가 대폭 개편되었다. 즉, 과거 1개 법(16개 세목)으로 되어 있던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11개 세목)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의 3개법으로 개편하였다. 지방세기본법에서는 지방세의 기본적인 공통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지방세법에서는 각 개별 세목에 대한 과세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지방세의 감면과 중과세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종전의 지방세법은 1개의 법에 여러 내용을 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잦은 개정으로 인하여 매우 복잡하게 되었으며, 그 구성과 체계가 납세 의무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어렵게 구성되어 있었다.²⁾ 이러한 비판에 따

2) 박훈, “지방세법 체계의 전문화 방안-지방세법 체계의 구체적인 전문화방안”, 「지방세」 제4호, 2007, 18면; 김완석, 「조세법 체계의 개편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6, 202면.

라 지방세법은 법체계를 기존의 1개법에서 현행 3개법으로 그 체계를 개편한 것이다.

이번에 이루어진 새로운 지방세 법제의 시행은 ‘지방세법 분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것으로 2010년부터 이미 도입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와 함께 지방세 분야의 양대 과제 또는 양대 숙원사업으로 지칭되어 왔었다.³⁾

지방세기본법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제정되었는데, 주요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전 일정 사유발생시만 수정신고가 가능하였던 것을 사유의 제한이 없이 과소신고시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과다신고시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둘째, 기존의 기한후 신고가 취득세만 신고납부기한 종료 후 30일내에 허용되던 것을 모든 신고납부 세목에 대하여 부과지 전까지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셋째, 체납액의 다과와 무관하게 체납이 3회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을 제한하였던 것을 100만원 이상의 체납액 요건을 추가하였다.

넷째, 성실납세자의 경우 재산의 압류와 매각 유예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세무조사의 기간을 20일 이내로 법정화 하고,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20일 이내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자체별로 4개의 지방세 관련 위원회를 운영하였던 것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감면관리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새롭게 제정되었다. 여러 조문에 산재한 지방세 감면규정을 통합하여 지방세 감면 운영에서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취지이다. 이에 따라 지방세지출예산

3) 이희봉, “지방세 분법의 성과와 의의”, 「지방재정과 지방세」 제27호, 2010, 3면.

제도의 도입과 운영기준 등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지자체 감면조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의 사전허가제를 폐지함으로써 감면조례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였다. 다만, 이에 따른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사전심의제 및 감면액 미보전 등으로 감면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위에서 설명한 법체계의 개편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법체계의 개편

종전 1개법		현행 3개법	
지방 세법	제1장 총칙	▶	지방세기본법(제정)
	제2장 도세	▶	지방세법(전면개정) (총 11개 세목)
	제3장 시군세 제4장 목적세 (총 16개 세목)		
	제5장 과세면제 및 경감	▶	지방세특례제한법(제정)

세목체계에서는 기존의 지방세법의 16개 세목체계를 재원 중립을 바탕으로 동일세원에 대한 중복과세 폐지와 유사세목의 통합 및 정책목적 상실한 영세세목의 폐지 등 3가지 기준에 따라 통·폐합하고 도축세는 폐지하여 11개 세목으로 간소화하였다.

한편,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통합하면서 도시계획에 따른 재산과세를 구(區)세로 하였지만,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자치구간 세수불균형 심화 방지를 위해 특별시세로 하였다.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통합되는 종전 사업소세는 광역시 자치구의 세수 유지를 위해 현행대로 세수 귀속을 유지토록 하였으나, 특별시는 자치구간 세원불균형 완화를 위해 세목통합안에 따라 시세로 귀속하게 하였다.

〈표 3〉 지방세 세목체계의 간소화

종전 : 16개 세목		개편 : 11개 세목
구분	종전	현행(세목 간소화)
중복과세 통·폐합	① 취득세 + ② 등록세(취득관련)	① 취득세
	③ 재산세 + ④ 도시계획세	② 재산세
유사세목 통합	② 등록세(취득무관) + ⑤ 면허세	③ 등록면허세
	⑥ 공동시설세 + ⑦ 지역개발세	④ 지역자원시설세
	⑧ 자동차세 + ⑨ 주행세	⑤ 자동차세 *주행세는 자동차세 하위세원
폐지	⑬ 도축세	폐지
현행유지	⑩ 주민세, ⑪ 지방세소득세, ⑫ 지방소비세, ⑬ 담배소비세, ⑭ 레저세, ⑮ 지방교육세	⑥ 주민세, ⑦ 지방세소득세, ⑧ 지방소비세, ⑨ 담배소비세, ⑩ 레저세, ⑪ 지방교육세

(1)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종전의 등록세 중에는 부동산 등 취득과 관련된 등록세와 법인등기 등 취득과 관련이 없는 등록세로 구분하여, 그 중에서 부동산, 선박, 차량 등의 취득과 관련된 등록세는 동일한 세원에 대한 중복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취득세와 통합하여 취득세로 개편하였다. 그러나, 세율체계를 종전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한 세율과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인하여 중복과세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실정이다. 즉, 단지 세목만 종전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하였을 뿐이고, 조세부담을 동일하기 때문에 중복과세의 문제 또한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한편, 법인등기 등 취득과 관련이 없는 등록세는 종전의 면허세와 통

합하면서 등록면허세로 통합하여 그 성격이 유사한 세목을 통합하여 개편하게 되었다.

이러한 취득세의 통합으로 인하여 납세자측면에서는 복잡한 지방세 세목이 줄어들어 납세 협력비용 등이 감소될 수가 있지만,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종전의 세율과 동일하게 적용받기 때문에 오히려 일시에 세부담이 증가될 수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납부기한을 종전의 30일간을 60일간으로 연장하였고, 취득하는 물건 중 주택과 차량 등에 대하여 분납제도를 도입하여 취득 후 30일 이내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는 분납할 수 있도록 하였다.⁴⁾

(2)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종전에 토지, 건축물, 주택 등에 대하여 과세되어 왔던 재산세를 부과할 경우 병기고지하는 도시계획세 등에 대하여 재산세로 통합하여 재산세로 개편하였다.

또한, 해당 지역의 특정자원 및 특정부동산으로 이익을 얻는 자에게 부과되는 목적세인 종전의 공동시설세는 그 성격이 유사한 지역개발세와 통합하여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하였다.

따라서 지역자원시설세의 구조는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와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구분되는 것이다. 이 경우 특정부동산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지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재산세 부과시 병기하여 부과할 수 있다.

4) 신고납부기간을 연장하였음에도 분할 납부의 대상이 일부에 국한되어 있어 분할 납부에 따른 세부담 완화 효과가 미흡하다는 주장도 있다. 김대영·김성주, 「통합 취득세의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1, 36면.

(3) 자동차세

자동차와 관련된 지방세 세목은 보유단계에서 부과되는 자동차세와 자동차의 운행시에 휘발유와 경유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행세로 구분되는데, 이를 하나의 자동차세로 통합하면서 그 성격이 유사한 세목을 통합하여 개편하였다.

(4) 주민세와 지방소득세

2010년부터 개편된 내용으로 종전의 주민세 중 균등할(개인균등할, 법인균등할)과 소득할(소득세할, 법인세할)로 구분되고 사업소세의 경우 사업장 면적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재산할과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종업원할 사업소세로 구분되었으나 지방소득세의 도입으로 사업소세를 폐지하고 종전에 과세하던 사업소세 체계를 주민세와 지방소득세에 흡수하여 개편하였다.

따라서 주민세에는 종전의 주민세 균등분(개인균등할, 법인균등할)과 사업소세(재산할)를 주민세 재산분으로 개편되었고, 지방소득세는 종전의 주민세 중 소득할 주민세를 소득분 지방소득세로 하고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개편하였다.

(5) 농업소득세와 도축세의 폐지

개편된 지방세법에서는 종전 지방세법 제197조에 규정된 농업소득이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었으나 징수유예된 농업소득세와 재원조달의 효과가 극히 미약한 도축세를 폐지함으로써 과세하려는 취지를 상실한 세목을 폐지하도록 개편하였다.

또한, 도축세는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국내 축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폐지를 결정하였다.⁵⁾

5) 행정안전부, 「지방세 선진화·전문화를 위한 지방세제 개편」, 2010, 3면.

나. 과세권의 분할

(1) 재산세의 공동과세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의 경우에 재산세(지방세법 제9장에 따른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와 재산세 과세특례(종전 도시계획세)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는 제외한다)는 구세이나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로 한다. 이 경우 공동재산세는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區)분 재산세는 각각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세액으로 한다.⁶⁾ 이 경우 특별시분 재산세는 보통세인 특별시세로 보고 구(區)분 재산세는 보통세인 구세로 본다. 다만,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특례에 따른 재산세는 구세가 아닌 특별시세로 한다.

공동재산세로 징수한 서울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관할구역의 구에 교부하여야 하되, 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기준 및 교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의 지방세수(地方稅收)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교부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에 균등배분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별시로부터 교부받은 재산세는 해당 구의 재산세 세입으로 본다.

(2) 주민세와 지방소득세의 특례

광역시시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장 제3절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및 같은법 제8장 제3절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주민세와 지방소득세가 광역시세임에도 불구하고 구세로 한다.⁷⁾

따라서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주민세와 지방소득세 전체가 서울특별시세에 해당된다.

6) 지방세기본법 제9조.

7) 지방세기본법 제11조.

제2절 지방세제의 문제점

2011년부터 개편된 지방세법의 분법화와 세목의 간소화에 따라서 형식상으로는 복잡한 지방세의 체계가 정리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세법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하에서는 현행 지방세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

2011.1.1.에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라 형식적인 분법화와 세목의 간소화는 이루어졌으나, 근본적으로 제기되었던 문제인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은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시대별로는 1995년 이후 전체 조세수입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났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서 각 정부가 꾸준히 지방분권 강화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지방세 규모는 20%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⁸⁾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서 정부에서 많은 세제개편과 지방세수 확충 노력이 있었으나 국세에 비하여 그 증가세는 미미한 실정이다. 지방세 규모는 2002년 31.5조원에서 2010년 49.2조원으로 56.2%가 증가하였다.

GDP 증가율 71.5%(2002년 684조원 → 2010년 1,173조원)과 국세 증가율 71.0%(2002년 103.9조원 → 2010년 177.7조원)과 비교시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증가추세에 있다. 이렇듯 지방세는 국세에 비하여 성장 폭이 작으며, 비중 측면에서도 변화가 크게 없는 현실이다.

8) 국회예산정책처, 「지방세의 현황과 과제」, 2011, 20면.

〈표 4〉 국세 및 지방세의 비중

단위 : 조원,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조세	147.8	152	163.4	179.3	205	212.8	209.7	226.9
(GDP대비, %)	19.3	18.4	18.9	19.7	21	20.8	19.7	19.3
국세	114.7	117.8	127.5	138	161.5	167.3	164.5	177.7
(국세비중, %)	77.6	77.5	78	77	78.8	78.6	78.5	78.3
지방세	33.1	34.2	36	41.3	43.5	45.5	45.2	49.2
(지방세비중, %)	22.4	22.5	22	23	21.2	21.4	21.5	21.7

출처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연감」 e-나라지표.

〈표 5〉 지방세 신장 추세

단위 : 조원,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지방세 징수액	31.5	33.1	34.2	35.9	41.3	43.5	45.5	45.2	49.2
(조세총액 대비, %)	23.3	22.4	22.5	22	23	21.2	21.4	21.5	21.7
(GDP 대비, %)	4.6	4.6	4.4	4.5	4.9	4.8	4.4	4.2	4.2
특별시	8.6	8.8	8.5	8.8	10	10.8	11.3	10.8	10.9
광역시	6.3	6.8	6.5	7.2	8.1	8.3	8.3	8.4	9.4
도	9.2	9.1	9.3	9.8	11.5	11.4	11.6	11.4	13.7
시	4.8	5.5	6.5	6.9	8.1	8.8	10.1	10.4	10.7
군	1.1	1.2	1.3	1.4	1.5	1.6	2	2.1	2.1
구	1.5	1.7	2.1	1.8	2.1	2.6	2.2	2.1	2.1

출처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연감」 e-나라지표.

통계 기준일 : 매년 2월말(직전연도 결산일) 기준.

이는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아도 상당히 낮은 수치에 해당한다. 아래 <표 6>에 나타나듯이, 2008년을 기준으로 미국과 일본 및 독일의 경우에는 조세총액 중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45%를 넘어서고 있으며, 비교적 지방세 비중이 작은 나라인 프랑스의 2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우리나라에 있어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국세에 비하여 국제적으로도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표 6> 조세총액 중 지방세 비중의 국제비교

국 명	연 도	비 중 (%)	
		국세	지방세
일 본	2008	53.7	46.3
미 국	2008	51.9	48.1
영 국	2008	89.8	10.2
독 일	2008	50.4	49.6
프 랑 스	2008	75.0	25.0

출처 : OECD Revenue Statistics, 2010년판.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와 함께 이전재원의 규모가 늘어나면서 전체 조세수입의 과반수가 지방자치단체로 배분되고 있다.

지방교부금 등을 통하여 지방으로 이전되는 재원을 포함할 경우 총 조세수입의 60% 가량을 지방정부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2009년을 기준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가 사용하는 비율은 42:44:14로 나타난다.⁹⁾ 즉, 오히려 지방정부의 비중이 중앙정부의 비중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지방정부의 경우에는 그 지출규모와 수입규모가 상당히 불일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9) 국회예산정책처, 전계보고서, 2011, 21~22면.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오랜 기간 동안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은 개선되지 않아 왔다. 또한, 조세에서 차지하는 낮은 지방세의 비중으로 인하여 지방정부의 지출 규모에 맞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지방교부금 등에 의존하게 되면서 그 자율성을 잃어버린 채 행정을 수행할 수 밖에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것이 지방세라고 할 때 이러한 재정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현실이다.

특히 2010년에 도입된 지방소비세의 경우 지방세수 확충이라는 목표 이외에 지방세수의 불균형 완화 및 비수도권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 국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상당한 재정조정기능이 부여되었고 이에 따라 왜곡된 측면이 있다.

또한 지방소비세와 같이 도입된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도 세목이 신설되었지만, 사실상 지방세수의 변화나 납세자의 조세부담 변화는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제고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¹⁰⁾

2. 체납에 따른 지방재정의 악화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부과, 징수하는 조세이다.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그 부과와 징수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며, 과세대상도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지역에 국한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0) 이영희 · 김대영, 「재정분권과 지방소비 · 소득세」, 박영사, 2009, 150면.

따라서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중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재원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하여 조달되는 자주적인 재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은 나날이 악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 및 체납현황을 파악하면 쉽게 나타난다. 먼저, 징수실적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7〉 지방세 세목별 징수실적

단위 : 천원

구분	총 괄	현년도분	과년도분	2009년도분	2008년도분	2007년도분	2006년도분	2005년이전
합 계	3,405,935,162	1,475,603,039	1,930,332,123	598,473,056	358,058,526	246,953,738	207,378,290	519,468,513
취득세	516,212,928	230,219,659	285,993,269	99,570,030	57,540,191	37,876,845	27,330,457	63,675,746
등록세	89,367,748	39,963,493	49,404,255	13,955,982	16,888,361	7,945,880	3,990,338	6,623,694
면허세	16,574,331	4,445,955	12,128,376	2,676,946	1,947,161	1,715,870	1,687,825	4,100,574
지방소득세	400,678,119	400,678,119	-	-	-	-	-	-
재산세	350,320,662	175,214,333	175,106,329	75,974,194	40,244,881	23,606,263	17,041,267	18,239,724
자동차세	777,902,927	337,313,515	440,589,412	124,711,975	74,710,275	51,538,022	50,822,134	138,807,006
농업소득세	5,521	-	5,521	-	-	-	-	5,521
지역개발세	661,194	220,067	441,127	146,366	86,221	79,606	44,572	84,362
공동시설세	58,155,371	24,201,835	33,953,536	11,593,584	6,588,660	4,145,162	3,901,097	7,725,033
지방교육세	295,260,618	141,462,075	153,798,543	53,022,466	31,941,703	20,256,367	18,200,230	30,377,777
주민세	726,617,215	50,948,921	675,668,294	185,277,096	111,881,172	89,676,836	73,971,639	214,861,551
도축세	1,087,403	788,875	298,528	228,657	69,597	-	1,443	-1,169
담배소비세	963,106	-	963,106	-	46	231,801	731,075	184
종합토지세	20,566,251	6	20,566,245	40,874	53,770	102,437	1,030,428	19,338,736
주행세	20,999	-	20,999	-	6,175	8,886	3,531	2,407
도시계획세	143,421,847	70,121,209	73,300,638	28,542,961	14,612,726	8,717,753	7,627,386	13,799,812
사업소세	8,118,922	24,977	8,093,945	2,731,925	1,487,587	1,052,010	994,868	1,827,555

출처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연감」, 2011.

〈표 8〉 지방세 세목별 징수율

단위 : 천원

구분 세목별	부과액	징수액	불납결손액	미수액	징수율(%)
합계	53,548,858,806	49,159,804,982	983,118,651	3,405,935,173	91.8
현년도계	50,245,813,859	48,505,121,141	265,089,672	1,475,603,046	96.5
취득세	7,079,194,333	6,824,895,019	24,079,658	230,219,656	96.4
등록세	7,420,945,673	7,370,146,593	10,835,585	39,963,495	99.3
면허세	80,922,704	76,211,708	265,039	4,445,957	94.2
레저세	1,067,457,606	1,067,457,606	-	-	100.0
지방소비세	2,678,932,292	2,678,932,292	-	-	100.0
지역개발세	95,671,528	95,433,329	18,129	220,070	99.8
공동시설세	675,860,465	649,608,851	2,049,776	24,201,838	96.1
지방교육세	5,020,087,153	4,871,011,193	7,613,892	141,462,068	97.0
주민세	294,103,835	223,428,071	19,726,837	50,948,927	76.0
지방소득세	8,720,648,010	8,145,446,125	174,529,244	400,672,641	93.4
재산세	5,003,379,215	4,817,329,284	10,835,593	175,214,338	96.3
자동차세	3,467,635,294	3,119,510,508	10,811,276	337,313,510	90.0
농업소득세	-	-	-	-	-
도축세	58,957,378	58,080,004	88,499	788,875	98.5
담배소비세	2,874,880,889	2,874,880,889	-	-	100.0
종합토지세	-815,018	-815,024	-	6	100.0
주행세	3,169,108,449	3,169,108,449	-	-	100.0
도시계획세	2,539,628,483	2,465,271,128	4,236,144	70,121,211	97.1
사업소세	-784,430	-814,884	-	30,454	103.9
과년도수입	3,303,044,947	654,683,841	718,028,979	1,930,332,127	19.8

출처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연감」, 2011.

앞의 <표 7>과 <표 8>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2010년의 징수 실적은 부과액이 53조 5,489억이고, 징수액은 49조 1,598억으로 징수율은 91.8%를 나타내고 있다. 세목별로는 레저세와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주행세가 10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개발세 99.8%, 등록세 99.3%, 도축세 98.5%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징수 규모로는 지방소득세가 8조 1,455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등록세와 취득세가 높은 징수규모를 보이고 있다.

반면, 과년도수입에 대한 징수는 부과액 3조 3,030억원에 비하여 징수액은 6,547억원으로 징수율 19.8%에 그치고 있다. 또한,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부과액 3,468억원이지만, 그 징수액은 3,120억원에 그쳐 징수율은 90%였으며, 주민세 역시 부과액 2,941억원에 비하여 징수액은 2,234억원으로 징수율이 76%에 불과하여 2010년 부과된 세목 중에는 최저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다.

징수실적을 검토한 결과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와 자동차세, 주민세가 가장 징수율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과년도수입액에 대한 징수액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시급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징수실적뿐만 아니라 체납액에 대한 통계에서도 지방재정 약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금방 드러난다. 현재 연도에 대한 징수도 중요하지만 과년도의 체납액에 대한 정리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표 9〉 지방세 체납액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총 괄	현년도분	과년도분	2009년도분	2008년도분	2007년도분	2006년도분	2005년 이전
합 계	3,405,935,162	1,475,603,039	1,930,332,123	598,473,056	358,058,526	246,953,738	207,378,290	519,468,513
취득세	516,212,928	230,219,659	285,993,269	99,570,030	57,540,191	37,876,845	27,330,457	63,675,746
등록세	89,367,748	39,963,493	49,404,255	13,955,982	16,888,361	7,945,880	3,990,338	6,623,694
면허세	16,574,331	4,445,955	12,128,376	2,676,946	1,947,161	1,715,870	1,687,825	4,100,574
지방소득세	400,678,119	400,678,119	-	-	-	-	-	-
재산세	350,320,662	175,214,333	175,106,329	75,974,194	40,244,881	23,606,263	17,041,267	18,239,724
자동차세	777,902,927	337,313,515	440,589,412	124,711,975	74,710,275	51,538,022	50,822,134	138,807,006
농업소득세	5,521	-	5,521	-	-	-	-	5,521
지역개발세	661,194	220,067	441,127	146,366	86,221	79,606	44,572	84,362
공동시설세	58,155,371	24,201,835	33,953,536	11,593,584	6,588,660	4,145,162	3,901,097	7,725,033
지방교육세	295,260,618	141,462,075	153,798,543	53,022,466	31,941,703	20,256,367	18,200,230	30,377,777
주민세	726,617,215	50,948,921	675,668,294	185,277,096	111,881,172	89,676,836	73,971,639	214,861,551
도축세	1,087,403	788,875	298,528	228,657	69,597	-	1,443	-1,169
담배소비세	963,106	-	963,106	-	46	231,801	731,075	184
종합토지세	20,566,251	6	20,566,245	40,874	53,770	102,437	1,030,428	19,338,736
주행세	20,999	-	20,999	-	6,175	8,886	3,531	2,407
도시계획세	143,421,847	70,121,209	73,300,638	28,542,961	14,612,726	8,717,753	7,627,386	13,799,812
사업소세	8,118,922	24,977	8,093,945	2,731,925	1,487,587	1,052,010	994,868	1,827,555

출처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연감」, 2011.

위의 〈표 9〉에서 볼 수 있듯이, 2010년 결산 기준 체납액을 보면 매년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체납 규모면에서는 자동차세가 7,779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주민세가 7,266억원으로 높았다. 그리고 취득세와 지방소득세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체납 지방세 중 주민세, 자동차세, 취득세의 세목이 징수과정과

체납세액의 정리과정에서 업무처리의 비효율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세목에서 지방세수확충을 위한 체납세 징수에 있어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주민세와 자동차세 및 취득세의 징수과정에 있어서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당해 연도에 대한 징수뿐만 아니라 과년도에 대한 체납액도 시급히 정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방세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징수실적 부진과 체납액에 대한 정리실적 부족이다. 그러나 이러한 징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2011년 지방세제 개편에 반영되지 않았다. 물론 지방세기본법 제74조에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기는 하였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던 방식에 비하여 납세자의 편의는 증가하였으나 징수체계를 변화시키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3.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의 문제점

지방세에 대한 비과세·감면은 과세대상에 대해 납부해야 할 지방세를 감면 또는 경감함으로써 지방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세에 대한 비과세·감면은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지방세 규정상 비과세되고 있는 대상과 전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과세물건 중에서 비과세나 감면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거나, 필요가 없는 세목들에 대한 과세 가능성을 재검토 하여 과세대상을 확대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비과세 범위의 축소대상은 부담자가 적고 과세액은 많으며, 직접 개인적으로 이해관계가 적을 뿐만 아니라 세부담에 대한 저항

22 제2장 지방세제의 현황과 문제점

이 크지도 않을 영리 단체를 주로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목도 대중성이 있는 재산세, 취득세 등에 대한 비과세·감면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업 및 외국자본 유치 등 정책적 목적의 감면제도도 목표 달성도와 효율성을 점검하여 점차적으로 과세를 검토하여야 한다.

〈표 10〉 지방세 체납액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세목별	합 계	지 방 세 법						감면조례	조세특례제 한법
	세 역	소 계	비과세				감면		
			소 계	국가 등	용도구분	기타			
합 계	14,810,644,066	12,004,165,752	6,045,493,168	3,298,858,597	809,340,433	1,937,294,138	5,958,672,584	1,510,859,936	1,295,618,378
취득세	4,761,326,578	3,690,062,347	678,937,578	184,117,553	128,662,344	366,157,681	3,011,124,769	523,684,095	547,580,136
등록세	3,936,166,015	2,966,430,924	331,084,719	128,653,374	81,698,795	120,732,550	2,635,346,205	500,003,344	469,731,747
면허세	3,807,056	3,807,056	3,806,358	127,891	3,678,467	-	698	-	-
레저세	7,438,331	-	-	-	-	-	-	7,438,331	-
지방소비세	-	-	-	-	-	-	-	-	-
지역개발세	346,650	346,650	346,638	297,242	49,396	-	12	-	-
공동시설세	83,930,737	77,292,428	71,659,406	46,424,302	25,235,104	-	5,633,022	6,620,401	17,908
지방교육세	259,836	-	-	-	-	-	-	-	259,836
주민세	47,889,915	47,310,976	41,972,408	19,803,853	6,551,475	15,617,080	5,338,568	574,892	4,047
지방소득세	162,327,095	159,353,924	156,075,760	13,360,292	15,635,130	127,080,338	3,278,164	2,097,523	875,648
재산세	3,169,486,177	2,934,181,139	2,685,476,554	2,275,881,728	409,594,826	-	248,704,585	222,633,013	12,672,025
자동차세	253,623,555	82,867,013	82,863,056	6,178,316	-	76,684,740	3,957	170,755,301	1,241
농업소득세	-	-	-	-	-	-	-	-	-
도축세	-	-	-	-	-	-	-	-	-
담배소비세	1,231,021,749	1,231,021,749	1,231,021,749	-	-	1,231,021,749	-	-	-
주행세	264,392,658	-	-	-	-	-	-	-	264,392,658
도시계획세	888,627,714	811,491,546	762,248,942	624,014,046	138,234,896	-	49,242,604	77,053,036	83,132
사업소세	-	-	-	-	-	-	-	-	-

출처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연감」, 2011.

세목별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세 세목 중 가장 큰 규모의 비과세·감면이 이루어지는 세목은 취득세로서 총 4조 7,613억원의 감면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등록세가 3조 9,362억원의 감면액이 발생하였으며, 재산세가 3조 1,695억원의 감면액이 발생하였다. 또한, 담배소비세에서 1조 2,310억원의 감면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담배소비세의 비과세·감면 합계액이 13조 980억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88%를 차지하고 있다.

〈표 11〉 사회복지 지원 등을 위한 감면(지방세법)

단위 : 천원

구분 세목별	합계	종교 및 제사단체	마을회등 주민공동 체	농어민지 원을 위한 감면	교 육 단 체	사회복지 법인 및 단체	정 당	국민생활 안정을 위 한 감면	영유아보육 시설
합 계	5,198,032,387	291,179,080	12,819,886	230,760,414	365,481,379	26,741,220	794,910	4,208,005,263	62,250,235
취 득 세	2,312,935,818	69,220,285	2,434,847	91,043,973	48,600,564	7,724,888	-	2,071,199,711	22,711,550
등 록 세	2,322,118,483	49,193,350	1,412,984	105,709,492	27,056,213	3,889,122	400	2,116,065,761	18,791,161
면 허 세	77,926	18,110	14,677	-	32,176	12,737	41	185	-
레 저 세	-	-	-	-	-	-	-	-	-
지방소비세	-	-	-	-	-	-	-	-	-
지역개발세	35,514	6,359	-	-	25,449	3,706	-	-	-
공동시설세	26,801,017	9,783,376	531,944	16,415	13,385,535	863,003	65,315	280,794	1,874,635
지방교육세	-	-	-	-	-	-	-	-	-
주 민 세	19,900,761	6,655,788	143,499	4,268,911	6,663,301	1,517,856	1,742	116,842	532,822
지방소득세	30,862,539	568,670	187,864	879,364	28,587,329	460,714	-	178,598	-
재 산 세	364,391,812	112,717,942	5,978,444	28,842,259	177,618,680	8,953,797	27,896	18,430,487	11,822,307
자 동 차 세	-	-	-	-	-	-	-	-	-
도 축 세	-	-	-	-	-	-	-	-	-
담배소비세	-	-	-	-	-	-	-	-	-
주 행 세	-	-	-	-	-	-	-	-	-
도시계획세	120,908,517	43,015,200	2,115,627	-	63,512,132	3,315,397	699,516	1,732,885	6,517,760
사업소세	-	-	-	-	-	-	-	-	-

출처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연감」, 2011.

물론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기여를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비과세·감면의 규모가 지나치게 증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재원인 지방세의 세원을 감소시키게 된다. 또한 최근 들어 중앙정부의 정책목표를 위하여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자주 이용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지방세의 세원이 감소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¹¹⁾

세목별 지방세 비과세·감면 자료와 사회복지 지원 등을 위한 감면 내역에 따라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의 주요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주택거래와 보유과세 중심의 지방세 체계 하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의 실효성은 그다지 많지 않으면서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지방정부의 재정력에 비하여 지나치게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최근 국가의 주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이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¹²⁾ 즉, 감면규모가 큰 것은 취득세와 등록세에 해당하는 거래세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거래세의 감면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의 수요 보다는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른 부분이다. 이러한 거래세의 감면이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여건을 더욱 열악하게 가중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¹³⁾

또한, 2011년 개편에 따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지방세 특례의 제한과 관련된 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외형적 입법취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조세특례제한법에 여전히 남아 있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에 관한 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시키지 못하였다는 점에

11) 국회예산정책처, 전계 보고서, 2011, 57면.

12) 예를 들어 2006년 5월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모든 유상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세율을 50% 감면하는 규정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13) 국회예산정책처, 전계 보고서, 2011, 59면.

서 입법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¹⁴⁾ 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 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 특례와 감면에 관한 사항 및 지방세 특례와 감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새롭게 도입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즉, 지방세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들을 국세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에 존치시키는 것은 법체계상 불합리한 면이 있다. 결국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지방세 특례와 감면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외에도 조세특례제한법을 함께 검토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지방세 감면 규정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규정하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4.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의 문제점

서울특별시에는 25개 자치구가 지리적으로 매우 밀접한 연계를 가지고 있으며, 도로, 교육, 치안 등을 공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존성에 불구하고 25개 자치구는 재정여건이 매우 다를 뿐만 아니라 재정 격차도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여왔다. 이는 25개 자치구 사이에 위화감을 발생시키고 통합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며, 궁극적으로 서울의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다.¹⁵⁾ 이러한 인식에서 서울특별시의 자치구간 재원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재산세수를 공동재원으로 하는 재산세공동과세가 2008년에 도입되었다.

14) 박성철, “2011. 1. 1. 시행 새로운 지방세 법제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2011, 90면.

15) 최항도, “재산세공동과세제도의 재정형평화 효과에 관한 연구-서울특별시 사례를 중심으로”, 동국대 박사학위 논문, 2011, 11~12면.

현행 공동과세제도의 주요내용을 보면, 자치구의 재산세에 대하여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으로 과세권을 가지되 그 비율을 50%로 하고, 서울시분 재산세는 그 재원을 25개 자치구에 같은 금액으로 배분하게 된다. 서울시분 공동과세율은 2008년 40%를 시작으로 2009년 45%, 2010년 이후 50%로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하며, 재산세가 감소하는 자치구에는 재원감소분을 한시적으로 2008년 60%, 2009년 40%, 2010년에는 20%를 보전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¹⁶⁾

첫째, 공동과세는 재산세만을 고려하여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다른 지방세 수입이나 세외수입이 많은 자치구가 있을 수 있다. 자치구세는 재산세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보통교부금과 배분상 연관이 있는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시 세외수입이 고려되기 때문에 재산세만을 고려한 배분방식은 문제가 있다.

둘째,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공급비용이나 자치구의 재정수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구, 면적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일정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요구되는 재정지출액은 인구가 적을수록, 면적이 넓을수록 증가한다. 즉, 인구가 적고 면적이 넓은 자치구는 인구가 많고 면적이 좁은 자치구에 비하여 공급비용이 높아지게 된다. 공공서비스의 공급비용 형평화의 관점에서 공공서비스를 자치구의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공급비용과 인구는 자치구간 상당히 차이가 나게 된다. 그러나 공동과세의 균등배분방식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재정형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른 배분방식이 존재하는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6) 최병호 · 이근재 · 최성희, “재산세 공동과세의 재원배분 효과”, 『지방정부연구』 13-4, 2010, 115면.

셋째, 재산세 공동과세는 자치구의 세수증대 노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재산세 공동과세의 공동과세율 50%를 적용하게 된다면 자치구의 세수확보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시 말해 재산세 수입이 증가한 자치구가 공동세로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증가하는 것과 같은 영향을 미쳐 자치구의 재산세 수입을 증가시키려는 유인이 사라지며, 징수율 제고, 체납액의 축소 등의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¹⁷⁾ 즉, 재산세의 추가적인 재원확보는 하지 않으면서 재정형평화 재원은 자동적으로 받게 되어 보조금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세수증대 노력과는 무관하게 매년 재원이 증가하므로 재정지출의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넷째, 보통교부금과 공동과세의 관계에서 재산세 공동과세의 도입으로 자치구의 재산세 수입이 늘어나는 자치구의 경우 재산세 공동과세의 시행으로 자치구의 재산세수입이 늘어나면 자치구세 수입도 증가한다. 자치구세 수입의 증가는 기준재정수입액을 증가시켜 보통교부금의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즉, 재산세 증가분이 보통교부금의 감소로 상쇄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¹⁸⁾

다섯째, 공동과세율의 불명확한 결정근거가 문제될 수 있다. 서울특별시가 재산세 수입이 급격히 축소되는 자치구들과의 합의를 통하여 공동과세율을 결정할 때에는 향후 세율을 둘러싼 논쟁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분명한 근거를 마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근거가 미약하다.¹⁹⁾

17) 최병호·정종필, “서울시 자치구간 재산세 공동세 제도 추진방안 분석과 대안 모색방안”, 『지방정부연구』 11-2, 2007, 75면.

18) 최병호·이근재·최성희, 전계논문, 118면.

19) 최향도, 전계논문, 2011, 137면.

5. 취득가액 과세표준 산정의 문제

지방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따라서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골프회원권 등 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이다.

이러한 취득세가 2011년부터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목의 간소화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어 취득세로 합쳐지게 되었다.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는 면허세와 합쳐져 등록면허세로 통합되었다.

그러나 통합된 취득세의 도입에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예를 들면 통합 전에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이지만 등록세는 과세대상이 아니었던 과세물건이 통합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어 납부하지 않던 등록세분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무허가 건물과 200㎡ 이하의 축사, 플로피 등이 있다.²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있으며,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실제의 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매매나 교환 등 실제의 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에 근거하여 과세표준의 산출이 가능하지만, 대형건축물의 신축으로 인한 취득과 같이 원시취득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계산에

20) 김대영·김성주, 전계 보고서, 2011, 63면.

있어 회계기준 및 관련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전문적이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납세자는 스스로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세율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여 잘못된 지방세 신고로 인한 가산세의 부담과 과세당국의 강제이행으로 인한 징세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즉, 재산권의 원시취득 및 간주취득에 따른 과세표준을 확정하기 위하여 회계적 계산과 세법의 적용과정을 거치게 됨에 따라 납세자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게 된다. 예를 들어 신축된 대형 건축물, 임대법인의 과점주주 취득과 같이 과세표준이 크고 그 계산과정이 복잡하여 세무회계적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전문가인 납세자에 의한 과세표준의 산출에는 그 능력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며, 그 정확성 또한 신뢰할 수 없다. 또한 비전문가에 의한 업무 대행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적정한 피해보상의 구제책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취득가액의 산정에 따른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

제3장 지방세 과세표준 양성화 방안

제1절 지방세 과세표준의 현황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부동산과 관련된 조세정책은 부동산 경기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주택 관련 조세정책을 통해 주택시장 문제를 풀려는 정책당국의 입장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존재한다. 특히 가장 어려운 것은 제반 환경의 제약 하에서 과세자료의 확보 적기성, 확보된 자료의 정확성이다.²¹⁾

지방세제는 그동안 끊임없이 개편되어 왔으나 현재의 지방세제도 문제점이 다수 존재한다. 특히 앞서 제기한 것처럼 고질적인 국세와의 불균형, 지방세의 징수실적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것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은 오랫동안 지방세의 문제로 지적되어 온 것으로 단시간에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본 연구에서는 개선에 있어 장기간 소요되는 지방세제의 문제점보다는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개선될 수 있는 지방세제의 개편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면에서 지방재정의 시급한 문제인 재정악화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과세표준의 양성화와 납세편의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방재정 악화를 막기 위하여 국세와의 불균형, 지방세 징수 및 체납 정리 실적과 같이 고질적인 지방세제의 문제보다 과세표준의 양성화와 납세자의 납부 편의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개편될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된다.

과세표준은 세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 물건의 가액 또는 수량을 말한다. 이는 세율과 함께 납세의무자의 세부

21) 노영훈, 「실지거래가격 신고에 따른 적정세율 추정 및 제도적 실행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3, 16면.

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세율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률로써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세부담의 크기는 과세표준에 의하여 좌우된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²²⁾ 따라서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에 있어서 중요하고 본질적인 내용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방세 과세표준의 운영체계는 최근 과세권 내부에서 조정되거나 결정되지 아니하고 외부적인 독립변수로서 작용에 있어서 지방세정의 효과적인 운영에는 오히려 한계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²³⁾

지방세는 경기에 비교적 비탄력적인 재산과세 위주의 세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세수규모가 안정적이지만 부동산 경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거래과세인 취득세의 세수는 안정적인 확보가 곤란하더라도 보유과세인 재산세 등은 과세표준을 적정하게 유지함으로써 비교적 지방재정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조세수입을 확보할 수가 있다. 따라서 과세표준의 양성화가 지방재정의 건전화 측면에서는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세의 징수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는 과년도에 대한 체납이 가장 큰 사유에 해당한다. 이러한 면에서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에 있어서 편의성에 대한 제고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된다. 물론 납세자의 체납은 탈세의 목적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따라서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 편의성을 중심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 전자납부시스템을 점검하기로 한다.

22) 김완석, 「개별공시지가의 행정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1997, 9면.

23) 전동훈, “지방세 과세표준 체계의 현황과 발전방향,” 「부동산포커스」 제32호, 2011, 4면.

1. 지방세 과세표준의 의의

세액의 크기는 세율이 불변일 경우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변동되므로 모든 조세에서 과세표준의 산출은 매우 중요하다.²⁴⁾ 지방세에 있어서도 과세표준은 세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지방세법 제10조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즉,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27조의 등록면허세의 경우에도 신고가액을 원칙으로 하며, 등기·등록자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일종의 자진신고납부제도하에서 최소한 세 개념의 추계과세방법론을 혼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²⁵⁾

한편, 재산세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0조에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서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지방세의 과세표준에서 공통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시가표준액이 지방세 세부담 수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준

24) 최명근, 「세법학총론」, 세경사, 2004, 298면.

25) 노영훈, “부동산관련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원칙 및 근본적 한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4, 5면.

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지방세 과세표준은 시가를 반영하도록 운영되어 왔다.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를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이용하여 왔으며, 2005년부터 주택에 대하여는 시가방식으로 산정되도록 개별주택가격을 이용하고, 일반 건물의 과세표준은 원가방식으로 하되 국세청 기준시가로 현실화하여 시행하고 있다.²⁶⁾

2. 시가 표준액의 의의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조세법률주의를 근간으로 하여 세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과세표준은 세액을 산출하는 기준으로 조세에 있어서 세율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과세표준은 조세객체인 과세대상물건에 대한 조세부과의 기준이 되고 그 표시는 금액, 물량, 건수 등으로 표시된다.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을 포함한 조세부과의 표준이 되는 가격, 수량, 행위 등이고, 시가표준액은 과세대상 물건을 과세함에 있어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의 한 종류이다. 취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의 적용시 최저기준금액도 시가표준액이며, 납세자의 신고가격이 시가표준액에 미달될 경우에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과세대상물건에 대한 과세표준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실거래가 신고체계를 확립하면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시가가 어느 정도 반영되었지만, 건물의 경우 실거래가 검증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획일적으로 국세의 과세표준을 지방세의 건물 과세표준으로 활용하여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다. 주택 이외의 건물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고시하여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고

26) 전동훈, 전계 논문, 2011, 4면.

있다. 건물의 경우에는 시가에 대한 현실화율도 낮고,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과세표준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의의는 매우 중요하다.²⁷⁾

3. 지방세 과세표준과 관련된 현행 규정

이하에서 지방세 과세표준과 관련된 현행 규정은 취득세와 재산세의 과세물건 중 부동산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지방세 중 대표적 거래세인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보유세인 재산세를 중심으로 현행 규정을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지방세 과세표준의 핵심 내용인 시가표준액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취득세

(1) 취득당시 가액과 연부금액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 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²⁸⁾

(2)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²⁹⁾

27) 전동훈, 전계 논문, 2011, 4면.

28)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29)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3) 건축·개수·종류·지목의 변경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치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³⁰⁾

(4) 과점주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 등의 총 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³¹⁾

(5) 사실상의 취득가격과 연부금액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³²⁾

30) 지방세법 제10조 제3항.

31) 지방세법 제10조 제4항.

32)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 ②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 ③ 판결문·법원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 ④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 ⑤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위의 경우에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³³⁾

- ①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 ② 할부 또는 연부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 ③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 ④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 ⑤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 ⑥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 ⑦ 위에 준하는 비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33)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인 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과 같은 간접비용도 포함된다.

또한 비용에는 취득에 소요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 그러나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³⁴⁾

한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³⁵⁾

- ①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 ②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등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부담하는 비용
- ③ 이주비, 지방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 ④ 부가가치세
- ⑤ 위에 준하는 비용

(6) 법인이 아닌 자의 건물 신축과 대수선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90%를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³⁶⁾ 별도로 계산한 취득가

34)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4155판결.

35)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36) 지방세법 제10조 제6항.

격에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³⁷⁾

- ①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
- ②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않는 금액 중 소득세법상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로 증명된 금액
- ③ 주택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나. 재산세

(1) 토지·건축물·주택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서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범위에서 공정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³⁸⁾

- ①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 ②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2) 공정시장가액 비율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³⁹⁾

- ①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 ②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다.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은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의 한 종류이다. 취득세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가액인 신고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가액이

37)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

38)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39)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재산세의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시가표준액은 지방세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1) 토지 및 주택

지방세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⁴⁰⁾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⁴¹⁾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국토해양부 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⁴²⁾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건축물

토지 및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 포함)의 시가표준액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⁴³⁾

40)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41)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

42)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은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3조).

43)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의 사항을 적용한다.

- ①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 ②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③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이와 같이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 건물의 구조 등도 참작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이유는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그 구조 등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⁴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산출체계는 다음과 같다.

$$\text{시가표준액} = \text{신축건물기준가액} \times \text{구조지수} \times \text{용도지수} \times \text{위치지수} \times \text{잔가율} \\ \times \text{면적(m}^2\text{)} \times \text{가감산율}$$

4. 국세의 과세표준과 관련된 현행 규정

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산정

거주자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⁴⁵⁾ 이 경우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한 금액으로 계산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산정은 양도차익이 기초금액이 된다.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⁴⁶⁾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양도가액에 의하며, 실지양도가액은 양도

44) 차강석·최한철, 「지방세해설」, 조세신보사, 2012, 900면.

45) 소득세법 제92조 제2항.

46)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47)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⁴⁷⁾ 다만, 자산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첫째,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에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를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둘째,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지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서 취득당시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환산가액과 기타의 필요경비 개산공제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셋째, 자산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모두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양도당시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에서 취득 당시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과 기타의 필요경비 개산공제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넷째,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양도당시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도 없는 때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와 기타의 필요경비 개산공제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한편, 거주자가 자산을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법인세법 제52조)에 의한 시가를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⁴⁸⁾ 또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48) 소득세법 제96조 제3항.

49)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4항.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⁴⁹⁾ 마지막으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용 아파트부지 매입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대금 이외에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매도자는 동 양도소득세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본다.⁵⁰⁾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 취득가액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지취득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실지취득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⁵¹⁾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하고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하며,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⁵²⁾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는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⁵³⁾ 또한, 양도자산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⁵⁴⁾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어서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한다.

첫째, 매매사례가액은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

50) 소득세법 기본통칙 97-6.

5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5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5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2항.

54)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한다. 다만, 상장주식, 코스닥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둘째, 감정가액은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한다.⁵⁵⁾ 다만, 모든 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셋째, 환산한 취득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에 의한다.⁵⁶⁾ 다만,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⁵⁷⁾

넷째, 기준시가의 경우에는 정부의 결정·경정시만 양도 및 취득기준시가 적용이 가능하다.

나. 상속·증여세의 과세표준 산정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⁵⁸⁾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평가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이 확인된 경우 이를 시가로 본다.⁵⁹⁾

55)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 제3항 제2호.

56)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 제2항, 동 시행령 제3항 제2호.

57)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 제2항 제2호.

5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5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상속이나 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증여재산은 대부분 평가기준일 현재 객관적인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상속이나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충적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토지 및 건물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하여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⁶⁰⁾ 토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별공시시가를 적용하되, 지정지역 안의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시가에 국세청장 고시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에 의한다. 지정지역 안에 있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부수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매년 1회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에 의한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공시한 공동주택가격에 의한다(다만,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에 의한다.

제2절 주요국의 지방세 과세표준 현황

1. 미 국

미국의 경우 부동산 재산세는 일반적으로 종가세(ad valorem tax)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 내에 있는 과세재산을 시장가치(market value), 즉 공정한 시장가치(fair market value)로

6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평가하고 있다. 평가는 주로 County에 소속된 평가관이 담당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과세재산의 시장가치에 과세 적용률(assessment ratio)을 곱한 값인 평가된 가치, 즉 공시가격이나 다수의 주에서 재산세의 급상승을 막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재산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공정가치 평가법(시장접근법), 거래사례비교방식 평가법, 및 비용접근방식 평가법, 소득접근방식 평가법의 4가지 방법으로 구분된다. 공정가치 평가법은 부동산이 매매되는 가치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주에서 원칙적으로 인정되는 방식으로 일종의 시가법이다. 거래사례비교방식 평가법(comparative sales approach)은 앞의 공정가치 평가법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 매매사례 자료를 수집한 후, 컴퓨터로 이를 분석하여 유사한 물건의 가격을 추정하는 방식이다. 비용접근방식 평가법(cost approach)은 평가대상 부동산을 재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원가를 기초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원가법이라고 할 수 있다. 소득접근방식 평가법(income approach)는 상업용건물의 경우에 적용되는 방법으로 수익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수익환원법이다.⁶¹⁾

2. 일 본

일본의 부동산 보유세는 지방세로서 고정자산세와 도시계획세가 존재한다. 일본 부동산 보유과세는 지가세, 고정자산세, 도시계획세, 특별토지보유세가 있었으나 지가세와 특별토지보유세는 현재 과세정지(지가세 1998년, 토지보유세 2003년부터 과세정지됨)된 상태이다. 고정자산세의 과세대상은 토지와 가옥, 및 상각자산으로 가옥에는 주택건물, 상업

61) 장근호, 「주요국의 조세제도 - 미국편(II)」, 한국조세연구원, 2011, 516~520면.

용 건물 등이 해당하며, 상각자산은 토지나 가옥 외에 기계장치, 선박, 항공기 등과 같이 회사나 개인이 사업을 위해 이용하고 있는 자산이다.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로서 도시계획구역이 있는 시정촌에서만 부과하고 있고, 과세대상에는 토지 및 가옥이 포함된다.

고정자산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고정자산의 가격으로 고정자산의 평가액은 총무성 대신이 정한 고정자산 평가기준을 기초로 하여 평가된 액수를 지사 또는 시정촌의 장이 결정하여 고정자산 과세대장에 등록한 것이 된다. 토지의 경우 고정자산평가기준에 의해 지목별로 정해진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데, 택지의 평가방법은 주로 ‘시가지택지평가법’이 이용된다. 가옥의 경우 고정자산평가기준에 의해 재건축가격을 기준으로 경년감점보정률을 곱하여 평가하며, 재건축가격은 평가대상이 되는 가옥과 동일한 것을 평가시점에 해당 장소에 신축하는 경우 필요한 건축비를 의미한다. 경년감점보정률은 가옥의 건축 후 경과된 연수에 의해 발생하는 감가상각 등을 의미한다. 신축가옥 이외의 재래분 가옥의 평가액 산식은 전 기준연도의 재건축가격에 건축가격의 변동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⁶²⁾

3. 영국

영국의 부동산 보유세는 카운슬세(council tax)와 비주거용 레이트(Non-domestic rate)로 구성된다. 카운슬세는 지방세로 분류되며, 비주거용 레이트는 국세로 과세되고 있다. 카운슬세의 과세대상은 주택의 자산가치와 주택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성인의 수에 의존하여 재산세와 인두세의 성격이 혼재하고 있다.

62) 국중호, 「주요국의 조세제도 - 일본편」, 한국조세연구원, 2009, 257~265면.

카운슬세의 경우, 자산의 과세표준은 주택의 시장가치와 성인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주택의 평가방법은 재산의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주택 평가액을 8개 과세 구간으로 나누어 평가하는 가격대 방식(value banded system)으로 자산가치가 가장 낮은 자산은 A등급, 가장 높은 자산은 H등급으로 8개 등급 존재하게 된다. 모든 자치단체가 8개의 과세구간을 갖고 있지만 구간별 과세액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비주거용 레이트의 경우 과세표준으로 시장에서의 연간 임대가치로 산정되는 과세평가액을 사용한다.⁶³⁾

제3절 지방세 과세표준의 문제점과 양성화방안

1. 과세표준 결정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 과세표준 결정권의 문제점

현행 지방세의 시가표준액 운영체계는 토지와 주택은 시장·군수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있는 반면, 공동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공시하고 있다. 미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공동주택가격이 미공시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하고 있다. 이외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산정·공시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각종 지수는 시장·군수가 결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시가표준액의 결정주체가 복잡하고 상이하게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납세자의 경우에는 과세표준

63) 박정수, 「주요국의 조세제도 - 영국편」, 한국조세연구원, 2009, 260~266면.

산정에 있어 문제를 제기함에 있어 그 대상을 파악하기 힘들게 된다. 특히 지방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여 지방재정의 운용에 쓰여야 함에도 결정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운용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표준지와 표준주택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공시하고 있으며, 개별필지와 개별주택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과 공시를 주관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여할 여지가 차단되어 있다. 따라서 결정·공시체계의 일관성이 부족하여 납세자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충분하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에서 일괄적으로 공시하고 있으므로 지역적인 특성과 평가액의 변동에 유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이외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가격기준액이 국세청에 의하여 결정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표준 운영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국세청의 기준시가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계산에 활용되는 기준으로 지방세와는 그 과세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이 국세청의 결정에 의하여 좌우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과세대상 재산에 대한 가치를 공공성과 효율성에 기초하여 과세표준 평가 수행을 총괄하는 규정이 없고, 단지 세법마다 정해진 규정에 따라 과세당국 내외의 평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확정하는 현실에 있다. 이로 인하여 부과된 관련 세금에 대한 적정성에 대하여 많은 이의신청과 불복현상이 발생하고 있다.⁶⁴⁾

64) 박정수, “부동산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 현실화방안 연구”, 「세무학연구」 제18권 제2호, 2001, 126~127면.

나. 과세표준 결정권의 개선방안

지방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 과세목적으로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기준인 만큼 과세표준과 재정은용은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방세 과세표준 운영체제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⁶⁵⁾ 현재로서는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세율과 함께 세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표준의 운영을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 지방세의 전체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표준 자율권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자치 또는 지방분권화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서비스 공급을 통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과세표준의 결정권한과 공시주체를 단일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지방세 과세표준의 결정권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으로 하고, 공시주체와 이의제기도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력 부족에 따른 일원화가 힘들다면 이와 함께 평가업무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평가업무를 전담하는 전문공무원을 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감정평가 일반, 부동산 관련법, 세법 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진 자들을 중점적으로 육성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치하고 개별 평가업무를 전담시켜 평가업무의 신뢰성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⁶⁶⁾

2. 시가표준액 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 시가표준액 산정의 문제점

지방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가액 결정의 보충적인 방

65) 전동훈, 전계 논문, 2011, 10면.

66) 이종규 · 변창흠, 「지방세 건물과표 개선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0, 147면.

법인 시가표준액은 그 자체로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시가표준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1) 강제적 적용의 문제

헌법 제59조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한 것으로서 조세의 요건과 그 부과절차는 국회가 정한 법률에 의거 규정되어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행정편의적인 운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오늘날의 법치주의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서 정하여야 한다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의 목적과 내용 또한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실질적 적법절차를 요구하는 법치주의를 말한다. 조세법률주의에 있어서도 이러한 실질적 적법절차가 지배하는 법치주의를 의미하므로, 비록 과세요건이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된 것일지라도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조세법의 목적이나 내용이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상의 제원칙에 합치될 것도 아울러 요구한다.⁶⁷⁾ 이러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의 시각에서 볼 때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강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정으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⁶⁸⁾ 즉, 당사자들이 실제 거래한 가격이 시가표준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시가표준액을 적용해야 한다면 이것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며, 실질적인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⁶⁹⁾

67) 이종규·변창흠, 전제서 147면.

68) 정지선,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 결정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구」 10-2, 2004, 333면.

69) 김백영,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취득 당시의 가액”, 「세무사」 제15권 제2호, 1997, 88면.

(2) 세부담과의 연계 문제

과세대상물건에 대한 가치를 현실화하는 것은 현실가격을 전제로 결정되는 정상가격을 지향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정상가격접근의 원칙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정상가격을 재산가치로 하여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른 납세자와의 균형유지를 통한 공평과세의 원칙 실현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부담의 불형평을 야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과세표준의 급격한 조정은 조세저항의 요인이 되므로 과세표준을 조정인상할 때는 단계적 조정의 원칙에 따라 점진적인 조정방법으로 하거나 합리적인 세율조정이 불가피한 것이며, 급격한 세부담의 인상은 나아가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여지가 있고, 그 침해로 인하여 사유재산권이 유명무실해지거나 형해화되어 헌법이 재산권을 보장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⁷⁰⁾

지방세 과세표준은 과세대상물건에 대한 가치를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과세표준이 지방세제의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객관성과 정확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의 현실화는 그 당위성을 얻게 된다. 그러나 일시에 과세표준을 현실화하고 세율을 인하하게 하는 것은 공평과세 측면에서는 타당하지만 납세자의 급격한 세부담의 증가는 안정적인 세수확보에도 역행되며, 또한 거래과세와 보유과세가 구분적용되지 아니하고 함께 사용되고 있고, 과세대상물건간의 현실화율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일시에 과세표준을 현실화하고 세율을 조정하는 것은 일부 납세자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현실화율이 낮은 과세대상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는 세부담이 급증하기 때문에 먼저 과세

70) 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8헌가13.

대상물건간의 과세형평이 보장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적용할 수가 없다 하겠다. 즉 과세대상물건 간의 표준편차가 적어야 하고 분포도가 밀집되어 있어야 한다.⁷¹⁾

즉, 조세부담의 형평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형평성이 필요하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의 불공평이 야기될 수 밖에 없다. 지역별, 납세자별로 과세표준에 대한 현실화율이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면 조세부담의 불공평이 초래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과세표준 현실화에 따른 과세표준 인상분을 반영하여 세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에 따라 세율적용 구간과 세율을 납세자의 세부담 형평에 맞게 적정하게 정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아니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과세표준과 세율의 적용이 연계되지 않아 최근 과세표준의 현실화로 인하여 재산의 평가액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세율이 탄력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으므로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보유과세의 세목은 누진세율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토지나 건물 과세표준의 세율구간과 세율을 정함에 있어서 현존하는 토지나 건물의 유형, 시가표준액과 현실화율 정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하여야 하며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조세저항이 커지게 될 것이다.

(3) 일반건물 시가표준액 산정의 문제

지방세법상 토지와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공시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비주거용 부동산의 건축물은 시장·군수가 원가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다. 즉, 소득세법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구조·용도·위치지수와 잔존가치율, 가감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부동산의 과세표

71) 전동훈, 전계 논문, 2011, 10면.

준액 적용방식을 달리 운영하다보니 운영의 비효율성, 납세자의 불편성 등이 초래되고 있다.⁷²⁾

또한 일반 건물의 시가표준액 산정 구조는 매우 복잡하여 납세의무자가 이해하기 불가능하여 과세표준 신고시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특히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종류도 다양하며, 과세표준 현실화율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나. 시가표준액의 개선방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가표준액은 과세표준의 양성화와 현실화를 위하여 개선하여야 할 문제점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토대로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시가표준액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 당사자들이 실제 거래한 가격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시가표준액을 강제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하는 것이다. 따라서 과세시가표준액이 사실상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그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⁷³⁾ 즉,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와 과잉금지의 원칙상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시가표준액의 적용은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둘째, 과세표준의 현실화는 공평과세의 측면에서는 타당하나 급격한 과세표준의 인상은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일으킬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단계적인 과세표준 양성화가 필요할 것이다. 과세표준이 조정 인상될 경우에는 단계적인 조정의 원칙에 따라 점진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거나, 합리적인 세율의 조정이 필요하다.⁷⁴⁾

72) 유상호, “일반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체계의 개선방안”, 「토지공법연구」 제44집, 2009, 321면.

73) 정지선, 전계 논문, 2004, 333면; 김백영, 전계 논문, 1997, 88면.

74) 전동훈, 전계 논문, 2011, 10면.

셋째, 비주거용 일반 건물도 시가를 반영한 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과세표준액의 적용 방법을 통일시켜야 할 것이다. 부동산 별로 과세표준의 산정 차이로 과세형평성이 저해될 수 있다. 따라서 일반건물의 경우에도 시가를 반영한 과세표준액을 공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실적으로 전체 건물에 대하여 시가를 반영한 과세가격을 공시한다는 것은 과다한 비용이 요구되어 도입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가격 공시를 담당하는 기관과 과세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일반 건물에 대한 가격공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3. 사실상 취득가액 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 사실상 취득가액 산정의 문제점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의 범위인 취득가액의 범위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의 취득가액의 범위는 일체의 비용을 취득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모든 비용이 포함되는 것처럼 보이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⁷⁵⁾

(1) 취득가액 범위의 문제점

취득비용의 범위에는 당해 물건의 취득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을 과세

75)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4155판결.

표준에 포함하고 있으나, 판결에서는 취득과 관련성이 있는 부분만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일체의 비용에 관한 과세권자와 납세자의 이해에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다. 또한 각종부담금 등이 최근에 신설됨에 따라 과세표준 포함 여부가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과세표준의 범위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⁷⁶⁾

(2) 취득비용 구성항목별 문제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어느 비용을 취득가격에 포함시킬 것인가가 문제되는 바 취득가격의 포함 여부가 문제되는 항목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부가가치세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가 문제된다.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공급가액의 10%를 부담하는 국세이다.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취득세 납세자가 과세물건 취득을 위하여 국가에 부담한 세금에 대하여 다시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개인과 법인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는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지급비용의 범위에서 제외한다.⁷⁷⁾

그러나 취득가격이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요된 일체의 비용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무조건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과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통하여 취득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그 취득을 위하여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

76) 전동훈, “지방세법상 사실상의 취득가액 적용 법리”, 「지방재정과 지방세」 제14권, 2009, 49~50면.

77) 차강석·최한철, 전거서, 2012, 785면.

액도 취득을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⁷⁸⁾ 즉, 부가가치세는 그 취득자가 과세사업자인지 또는 면세사업자인지의 여부에 따라 다르게 취급되어야 마땅하다.

둘째, 연체료와 할부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가 문제된다. 연체료와 할부이자는 원칙적으로 취득가액에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개인과 달리 법인이 과세물건을 취득하면서 부담한 연체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한 것은 법인의 경우 과세물건의 취득에 소요된 연체료와 할부이자의 경우 취득비용에 포함하여 기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⁷⁹⁾ 그러나 취득세에 있어서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거래 상대방 등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을 말하는데, 연체료는 일반적으로 취득시기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러나 할부이자의 경우에는 그 취득시기가 대부분 잔금지급일이라고 할 때, 취득시기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이므로 개인이나 법인이나에 따라 취득가격을 달리 산정하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이 없다.⁸⁰⁾

또한 연부취득에 소요되는 금융이자인 연부이자의 경우에는 할부이자와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있다. 문제는 개인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면서 지급하는 이자가 할부이자이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나, 연부이자이면 과세표준에 포함하게 된다.

셋째, 건설자금이자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건설자금이자는 지방세법상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바 없으나, 통산 토지취득이나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지급된 차입금 이자로 보아야 할 것이

78) 정지선, 전계 논문, 2004, 345~346면.

79) 차강석·최한철, 전계서, 2012, 786면.

80) 정지선, 전계 논문, 2004, 347~348면.

다.⁸¹⁾ 그러나 사업용 고정자산과 관련된 비용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재고자산 등과 같은 모든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건설자금이자도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지는 여전히 해석상의 문제이다.

또한 회계처리방법에 따라 기간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건설자금이자의 경우에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3) 원시취득시 취득가액 계산의 문제점

매매, 교환 등 실제의 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에 근거하여 과세표준의 산출이 가능하지만, 대형 건축물의 신축으로 인한 취득과 같이 원시취득의 경우에는 취득가액 계산에 있어 회계기준 및 관련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전문적이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납세자의 측면에서는 복잡한 계산과정에 대한 부담감과 잘못된 신고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부담이 따를 수 있다. 즉, 비전문가인 납세자에 의한 과세표준의 산출에는 그 능력에 일정한 한계가 따르며, 그 정확성 또한 담보할 수 없다.

또한 법인의 담당자 또는 비전문가가 장부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경우 비전문성으로 인하여 과세표준의 산출이 부정확하고 이에 다른 추가적인 비용(가산세 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비전문가에 의하여 업무대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보상과 같은 구제책도 없는 현실이다.

나. 사실상 취득가액 산정의 개선방안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어느 비용을 취득가격에 포함시킬 것인지가 문제되는 항목들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81) 차강석·최한철, 전거서, 2012, 789면.

첫째, 취득비용의 범위에는 당해 물건의 취득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나, 취득과 관련성이 있는 부분만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일체의 비용에 관한 과세권자와 납세자의 이해에 차이가 많이 발생하므로 명확한 규정으로 재정립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는 것 보다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여부에 따라 달리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과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통하여 취득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으나,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셋째, 연체료의 경우에는 취득가격에서 제외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할부이자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취득시기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넷째, 연부이자의 경우에는 개인이 취득시 지급하는 이자가 연부 또는 할부 여부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 이러한 규정은 일관성이 없으므로 연부이자와 할부이자의 경우에는 과세표준 포함여부를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다섯째, 건설자금이자의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과 관련된 비용만을 포함하는 법인세법 규정을 준용하지 않으므로 재고자산에 계상된 건설자금이자도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축된 대형 건축물이나 임대법인의 과점주주 취득 등과 같이 과세표준이 크고 그 계산과정이 복잡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신축 건축물과 같은 원시취득의 경우에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시가산정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나 현행 규정과 같이 원시취득에 대하여 현실적인 취득가액을 원가방식으로 인정하는 체제에서는 이를 보

완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권을 원시취득 및 간주취득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신고납부시 세무사와 같은 전문가의 사전검증을 받아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는 납세자의 책임을 분담 또는 경감시키는 효과는 물론 전문성에 수반되는 책임성으로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유도할 수 있어 조세의 공평과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전검증을 통하여 납세자 측면에서는 가산세 등의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기대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의 부담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도 신고내용의 확인절차 및 과세 불복에 따른 소송 등으로 인하여 징세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과세표준을 산출할 수 있도록 사전검증제를 도입하는 것이 징세비용의 절감과 세수확보에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형 규모의 건축물과 같은 원시취득과 산출과정이 복잡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의 경우에는 사전검증을 통하여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전검증시에는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등에 대한 체크리스트(check list)를 도입하여 누락되거나 중복계산되는 항목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4. 과세표준 결정의 장기적 개선방안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이 보장되면 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에서는 자주적으로 지방세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주적으로 지방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제약이 필요하다. 특히 지방세의 과세표준은 현실화가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현실적으로 시가를 보유과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

은 적용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과세표준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여건에 맞게 자주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이상적인 것이나, 현재의 여건은 교통통신의 발달, 정보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입으로 지방자치를 하더라도 과세문제는 다른 자치단체와의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아가 과세표준의 결정도 지역의 특성이 없는 한 동일한 과세대상물건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표준을 결정하지 아니하면 납세자의 이해를 얻기 어렵고 조세저항을 야기시킬 수 있다.⁸²⁾

지속적으로 과세표준의 현실화를 추진하는 것은 세입 측면에서의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나 급격한 현실화는 주민들의 조세저항을 야기할 것이다. 따라서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⁸³⁾ 특히 재산세의 경우에는 취득세와 달리 실제 가액은 인정하지 않고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과세표준 결정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무리 과세표준 결정에 있어서 자율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자치단체와 지역간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이러한 보장이 오히려 과세표준결정에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방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야 지방자치의 정신에도 부합된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과세자주권을 활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지방주민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데 주력하는 사례가 있어 오히려 과세불형평을 야기 시키고 나아가 지역간의 과세불형평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세자주권의 행사

82) 전동훈, 전계 논문, 2011, 9~10면.

83) 박완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와 과표현실화”, 「지방세」 2003-4, 2003, 32~33면.

라는 것은 과세공평성의 실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용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과세표준 결정은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데 있어 각 개별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를 정립하게 하는 것은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의 객관성 확보와 각 지방자치단체간의 조화를 도모하는 데 한계가 발생하게 된다.

과세표준은 당해 부동산에 대한 가치인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결정은 왜곡됨이 없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를 토대로 과세자율권에 의거 지역실정에 맞게 결정된다면 국가차원의 과세공평성의 추구하고 지방자치측면에서의 과세 자율성을 조화시키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지방자치단체에 과세표준 결정권과 과세자율권이 동시에 주어진다면 과세공평성을 추구하여야 하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가치가 퇴색되어 버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만약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과세자율권과 과세표준 결정권이 지방자치의 역량을 강화하는 측면보다 오히려 이를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개선은 분명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지방자치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재정운영의 자율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는 자체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보상이 필요하다. 또한 장기적으로 중앙정부에서는 가이드라인을 비롯한 각종 경제·사회 관련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토대로 자율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⁸⁴⁾

84) 박완규, 전계논문, 2003, 34~35면.

제4장 지방세 온라인 수납시스템 개선방안

IT기술의 발전에 따라 우리나라의 조세행정도 정보화가 시작된 이후 많은 발전을 거듭하여 조세의 전자납부까지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2001년에 제정된 전자정부법에 의하여 조세의 전자납부가 법률적인 뒷받침을 확보하게 되었다.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세정의 구현은 단순히 납세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의 차원이 아니라 과세당국의 입장에서 세무행정의 정보화를 가속화하고, 생산성과 투명성도 함께 혁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전자세정은 점차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세의 경우 자치단체 운영예산의 효율성 제고와 세정업무 투명성 강화, 선진 납세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자치단체별로 각기 구축·운영되던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전국통합관리를 시작하였다. 현재 지방세정보화 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운영하던 지방세 업무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전국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데이터베이스와 프로세스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어 효율적인 세정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러한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을 근간으로 다양한 납세자의 정보서비스 제공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한 지방세 전자 신고·납부가 가능한 통합 지방세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⁸⁵⁾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 수납시스템을 각 납부방법별로 구분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전자납부시스템인 위택스(WeTAX)를 중심으로 서울특별시의 전자납부시스템 이택스(e-TAX) 그리고 국세 전자납부시스템인 홈

85) 이기범, “인터넷 지방세종합서비스 시스템 위택스”, 「지역정보화」 제51호, 2008, 67면.

텍스(HomeTAX) 등을 비교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앞으로 지방세 전자납부시스템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제1절 지방세 수납시스템의 연혁 및 현황

1. 지방세 수납시스템의 연혁

지방세 수납제도는 1975년 지방세 은행 수납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급격하게 정보화되어 왔다. 1985년에는 지방세 수납창구가 전국 27개 지역으로 확대되고, 지방세 은행지로 제도가 도입되었다. 1987년에는 지방세 수납처리 전산화를 위한 OCR(광학식문자판독기, Optical Character Reader)체계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OCR 체계의 도입 후 1995년 취득세와 등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하여 지방세 수납 전산화를 위한 OCR 고지서를 시행하였다. 1997년에는 지방세 자동이체와 신용카드 납부제도가 도입되었고, 2000년에는 금융기관 지방세 인터넷 납부제(은행 인터넷뱅킹,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등)가 시행되었다. 2006년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을 개발 및 보급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부과·징수업무의 전산시스템을 표준화하였다. 2007년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신고·납부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나, 납세자 측면에서 불편한 점이 다수 나타나게 되어 2009년 지방세 납부시스템 및 서비스 혁신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2010년에는 통합 지방세 수납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2011년부터는 지방세 납부 온라인 전환을 시행해오고 있다.

따라서 1995년부터 지방세 수납처리에 사용되어온 OCR수납제도를 2012년부터는 온라인 수납제도로 전면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지방세 온라인 수납제도의 경우 납세자의 입장에서 납부체계를 개편한 것으로

납부기한 내 징수율의 향상과 수납처리 절차의 간소화, 고지서 보관비용의 절감이라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2. 지방세 납부시스템의 현황

기존의 지방세 수납방식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지자체별로 별도의 수납대행기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과, 통합된 수납시스템의 부재에 있었다. 그 결과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낮고 지자체간 호환성이 제한되며, 전국적으로 온라인 공유가 되지 않아 각종 파생적인 문제가 수반되고 있었다. 2009년 고지방식별 현황에서 보자면 여전히 OCR고지가 총 1억 2,987만건 중 1억 2,531만건으로 96.5%를 차지하고 있고 전자고지는 456만건으로 3.5%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즉, 대부분의 고지방식이 OCR고지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전자고지에 대한 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상황이었다. OCR고지 방식의 경우에는 많은 행정비용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되어 세제 운영상 효율성에 있어서는 매우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표 12〉 고지방식별 현황(2009년 기준)

총 계	OCR고지	전자고지
1억 2,987만건(100.0%)	1억 2,531만건(96.5%)	456만건(3.5%)

출처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09. 7. 23.

납부방식에서 보자면 신용에 기반한 신용카드납부는 7.9%에 불과하고 92%가 현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표 13〉 납부방식별 현황(2009년 기준)

구 분	현금납부(Cash)		신용카드 (Credit)
	직접현금수납	계좌이체	
건수 (비율)	651만 (5.0%)	11,311만 (87.1%)	1,025만 (7.9%)

※ 계좌이체 : 인터넷 6.8%, ATM 80.3% / 신용카드 : 인터넷 7.1%, CAT 0.8%

- 인터넷납부 : WeTax나 각 신용카드회사 개별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고 자신의 과세번호를 입력하면 부과내역을 알 수 있고 은행계좌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음
- ATM : 은행 등에 설치된 자동입출금기에 카드와 OCR 고지서를 입력하고 지방세를 납부
- CAT : 신용카드 결제를 위한 전용단말기로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출처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09. 7.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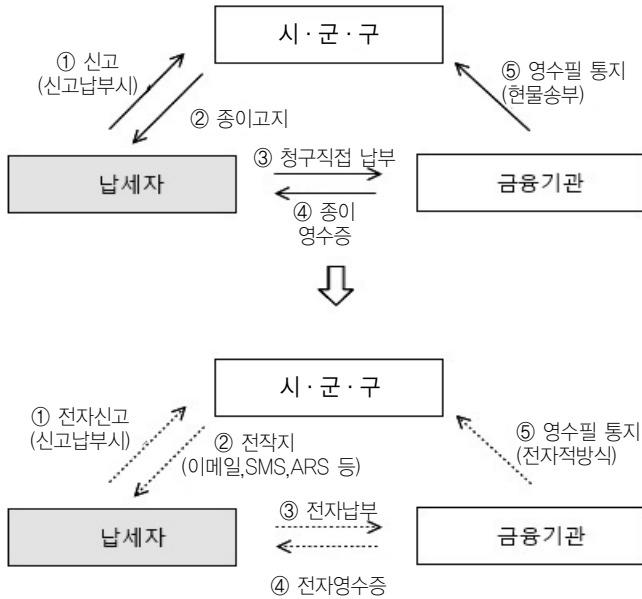
2009년을 기준으로 지방세 납부방식의 문제는 96.5%는 여전히 OCR 종이고지에 의존하고 있고, 전자납부도 계좌이체가 대부분이고 신용카드납부는 7.9%에 불과하다. 또한 인터넷에 의한 납부도 절차가 까다로워 활용도가 낮은 편이다. OCR 종이고지가 여전하기 때문에 전자납부제를 도입했음에도 행정비용(고지서인쇄, 우편발송, 영수증처리 등)은 줄어들지 않고 있고, 또한 신용카드는 사용이 불편하고 비용부담도 크기 때문에 납세자로서는 큰 실익이 없어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전자납부 뿐만 아니라 고지에서부터 영수필 통지까지 전과정이 전자화되어야 제대로 비용절감 및 편의증진의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납세자가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납세자의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과세통보에 있어서 전자고지방식을 높여야 한다는 것과 전자납부에 있어 신용카드의 납부비율을 높이는 것이 전자신고·납부 시스템의 핵심이다.

온라인납부는 아래 그림에서 ②, ③, ④, ⑤의 전과정이 온라인상에서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OCR고지서(종이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전자납부이지만 온라인 납

부는 아니게 된다.

〈그림 1〉 온라인납부제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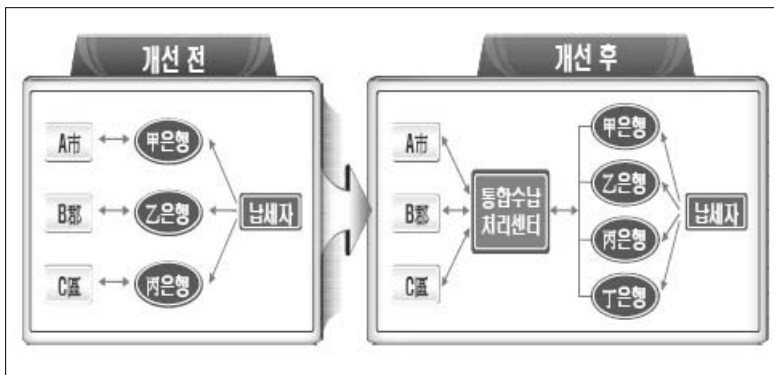
※ 온라인납부제 : ②, ③, ④, ⑤가 모두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것
전자납부제 : ③만 전자적으로 처리된 것

기존 온라인납부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ATM 또는 인터넷을 통해 지방세를 전자납부할 때 반드시 OCR 고지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납세자는 전자고지를 신청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다만, 납세자가 전자고지를 신청할 경우 별도로 OCR고지서는 발부하지 않는다. 인터넷 상에서는 전자고지서가 있으면 납부가 가능하지만 인터넷 사용에 익숙한 납세자가 아니면 사용하기가 매우 불편한 것이 기존의 시스템이었다. 왜냐하면 이메일로 수신된 전자고지서의 29자리 과세번호를 바탕으로 납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OCR 고지서가 없어도 납부나 영수증관리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었으며, 현재에는

고지서가 없더라도 납부나 영수증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온라인 시스템이 통합되었다.

2012년부터 지방세 납부체계 선진화 정책의 추진에 따라 지방세 온라인 수납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지방세 납부체계 선진화는 납세자가 고지서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납부수단으로 지방세를 납부 가능토록 하고, 납부한 지방세를 즉시 납부처리 하여 납세자가 납부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납부서비스이다. 이로 인하여 지방세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증진하고 수납처리 과정의 투명성 신속성을 제고하여 지방세무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림 2〉 지방세 납부체계 선진화 전후 비교



개편된 지방세기본법에는 지방세 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련된 제도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납세자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지방세기본법 제142조의2 제1항).

- ①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지방세수납대행기관 정보통신망의 연계
- ② 지방세 납부의 실시간 처리 및 안전한 관리와 수납통합처리시스템

의 운영

- ③ 지방세 납부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각종 서식의 개선
- ④ 지방세의 전국적인 조회, 납부, 수납처리 절차 및 성능개선과 안정성 제고에 관한 사항
- ⑤ 그 밖에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과 관련된 기관의 범위 등 운영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납세자의 편의성 제고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세수납시스템의 이용에 지역 간 차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지방세기본법 제142조의2 제2항).

한편, 통합수납처리센터에 대한 근거는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다. 통합수납처리센터는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결제원간의 별도계약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와 수납대행을 담당하는 은행과 위탁납부를 처리하는 신용카드사간의 수납자료와 자금이체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및 그 밖의 세입금 수납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주민의 납부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약정을 체결하여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의2).

- 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제10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고업무의 일부를 취급하는 자를 포함한다)
- ②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제10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고업무의 일부를 취급하는 자를 포함한다)
- ③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결제중계시스템의 운영자
- ④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자 외에 지방세 및 그 밖의 세입

금 수납업무 처리와 관련되는 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

지방세 온라인 납부서비스에 따라 기존의 OCR방식에서 가장 크게 변화된 것은 다음의 세가지이다.

첫째, 납부창구가 다양화되었다. 자가지역 은행에서만 납부하거나 일부의 신용카드로만 납부가 가능하던 것이 전국의 모든 은행에서 납부하거나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도록 되었다.

둘째, 종이고지서가 필수적이었던 납부방식이 고지서 없이 온라인화되었다. 기존에는 OCR 고지서를 소지하고 은행을 방문하여 OCR 전용 수납기 또는 은행창구에서 납부하여야 했으나 온라인 납부서비스하에서는 OCR 고지서 없이 은행을 방문하여 통장이나 현금, 신용카드로 CD기나 ATM기를 통하여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위택스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납세지, 납세번호를 입력할 필요가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셋째, 온라인 수납처리로 납부 후 즉시 수납집계와 확인이 가능하도록 되었다. 기존 OCR처리과정에 따라 납부 후 수납처리까지 1~2주가 소요되었던 기간이 사라지게 되었다.

3. 온라인 수납매체의 종류

가. 은행 창구

은행 창구를 통한 수납은 전국의 모든 은행과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에서 납부할 수 있다. 수납 가능시간은 각 은행 영업시간에 한하며, 납부와 관련된 수수료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나. 은행 CD/ATM기기

은행의 CD/ATM기기(현금입출금기)를 통한 수납은 전국의 모든 은행

과 영업점이 있는 비은행 금융기관에서 설치한 기기를 통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은행 CD/ATM기기의 지방세 납부가능 시간은 각 은행에서 정한 별도의 운영시간에 따른다.

다만, 은행의 CD/ATM기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그 은행이 발행한 것이 아닌 다른 회사의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에는 건당 900원의 수수료가 기기 및 망 사용료로 부과된다. 이 경우 부과되는 수수료는 납부 횟수당 계산되므로 여러 건의 지방세를 선택납부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는 동일하다.

〈표 14〉 납세자의 수수료 부담

구 분	국세	지방세
인터넷에서 납부할 때	납부금액의 1.2%	무료
CD/ATM에서 납부할 때(자행)	납부불가	무료
CD/ATM에서 납부할 때(타행)	납부불가	납부횟수당 900원

출처 : 지방세 온라인 수납업무 편람, 행정안전부, 2011.

지금까지 대부분 지자체가 신용카드 납부제를 도입·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에 의한 납부는 전체의 7.9%정도로 저조하였다. 왜냐하면 첫째, 각 지자체마다 사용가능 카드가 서로 다르며 지자체와 계약된 1~2가지 종류의 카드만 사용가능하였다. 둘째, 각 지자체마다 수수료나 서비스 내용이 다르게 되어있었다. 셋째, 반드시 OCR고지서의 29자리 과세번호가 있어야만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였다. 넷째, 사용시간대가 제한되어 있고(평일에만 09:00~22:00 가능), 통합된 카드결제시스템이 없이 각 신용카드사 회사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였다. 다섯째, 신용카드사 입장에서조차 자치단체별로 카드사와 계약을 맺기 때문에 시장이 협소하여 수익성이 낮고 시스템 운영에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 것도 하나의 요인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세 납부체계 선진화에 따른 온라

인 납부의 경우에는 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였다고 볼 수 있다.

CD/ATM기기의 경우 현금카드와 신용카드 모두 전자납부번호 입력과 본인 또는 타인납부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고지건별로 납부가 가능하고, 법인의 경우 전자납부별로 건별 납부만 가능하다.

본인납부의 경우에는 납부자가 사용한 카드의 은행 또는 신용카드사로 실명번호 조회 후 카드번호에서 추출한 실명번호를 이용하여 고지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최대 4건까지 일괄적인 선택 납부가 가능하며, 4건을 초과하여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된 건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4건씩 조회하고 납부한다.

타인납부의 경우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납부자가 간편납부번호를 입력하여 납부한다.

다. 은행 인터넷 बैं킹

인터넷 बैं킹의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 및 산림조합을 제외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한 전국의 모든 은행과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의 인터넷 बैं킹으로 전국의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와 관련된 수수료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전국의 지방세 고지정보를 조회할 경우 본인은 주민등록번호, 타인의 경우에는 간편납부번호, 1건씩 단건으로 납부하기 위해 고지정보를 조회할 경우에는 전자납부번호를 선택하여 조회한다.

라. 위택스(WeTAX)

위택스는 <http://www.wetax.go.kr>을 입력하면 위택스에 접속이 가능하다. 다만, 초기 접속시 공인인증서와 관련된 프로그램과 보안프로그램

램을 설치하여야 접속이 가능하다. 초기 접속시 회원가입을 통하여야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가능하다. 비회원 납부의 경우에는 위택스의 회원가입 없이 고지내역 조회는 가능하나 납부를 위해서는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http://www.giro.or.kr>)에서 회원가입을 하여야 한다.

또한, 위택스의 경우 국세 전자납부시스템인 홈택스(HomeTAX)의 신고분 조회납부를 선택하여 국세 부가 세목의 경우 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를 위해서는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http://www.giro.or.kr>)에서 회원가입을 하여야 한다.

마. 인터넷 지로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는 <http://www.giro.or.kr>에서 접속이 가능하다. 다만, 초기 접속시 공인인증서와 관련된 프로그램과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접속이 가능하다. 행정구역 선택을 전국으로 할 경우 납세자에게 부과된 전국의 모든 지방세가 조회된다.

조회정보에서 지방세 고지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납부방법은 전체 고지건수에 대한 총 납부금액을 한번에 납부하는 전체납부와 원하는 고지건을 선택하여 납부하는 선택납부가 가능하다.

OCR고지서를 없애면 전자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들은 불편이 있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새로운 불편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방법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하려면 · OCR고지서 · 통장(또는 카드)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데 현재로는 · OCR고지서가 필요 없어지게 되었다. 즉, OCR을 투입하는 절차가 생략되었다. 또한 본인이 전자고지를 신청하지 않는 한 OCR이 없어지더라도 과세통지는 계속할 방침이다. 그러나 과세통지는 단순히 과세내역을 알려주는 종이고지서에 불과한 것으로 OCR과는 기능이 전혀 다르다. 전자고지 신청은 납세자가 미리 종이고지서가 아닌 이메일이나 SMS,

ARS 등으로 납세고지를 받기로 신청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납세자들에게 편리한 전자고지 서비스를 계속 개발하여 종이통지도 점차 줄여나가 되 일부 노년층에 대한 배려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2절 지방세 납부시스템 개선의 효과

지방세 납부 방식 개선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납세자 측면에서 전국 어디서든 과세관청에 관계없이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신용카드 또는 은행계좌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종이고지서가 불필요하게 되어 자동이체, 자동대출, 장기할부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 등으로 납세자 편의에 따라 납세가 가능하게 되었다.

둘째, 과세관청 측면에서도 지방세 납부방식의 통일로 지자체별 개별 수납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던 비용·인력의 절감할 수 있었으며, 지자체간 상이한 수납방식에 따른 주민불만 및 지자체간 자금이체 문제 등이 서비스의 표준화 및 통합수납시스템 구축으로 해결되었다.

셋째, 비용적 측면에서는 납세자 수수료 절감 및 우편요금 등 행정비용 감소로 직접적인 비용절감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며, 그간 상당한 업무부하를 가져왔던 영수필 수납 및 대사작업이 없어져 지자체 및 금융기관 공히 상당한 업무부담이 경감되었다.

〈표 15〉 연간 비용절감효과 추계내역(2009년)

(연간 총 4,400억원)

- 납세자 : 1,396억원 (카드수수료 절감, 카드납부기간이익 등)
- 과세관청 : 1,584억원
 - OCR처리비용 절감 : 995억원
 - 종이고지서 감소효과 : 589억원(등기우편료 절감 등)
- 금융기관 : 1,420억원(OCR 처리비용)
- ※ 직접비용만 추계한 것이며 추산곤란한 간접비용은 제외

출처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09. 7. 23.

제3절 온라인 납부시스템 비교

1. 서울특별시 인터넷 납부시스템 이택스(ETAX)

서울시에서는 지난 2001년부터 지방세를 납부하는 시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최초로 인터넷 세금납부 서비스인 ETAX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지방세 인터넷납부 시스템인 ETAX 홈페이지를 이용시민의 요구사항 등에 맞추어 지방세에 대한 정보이용 콘텐츠를 다양하게 개발하여 서비스 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세금납부를 위해 은행에서 납부를 해야만 하는 시민불편을 없애고, 인터넷 세금납부 가능시간도 365일 연중무휴 하루 24시간으로 확대·운영하면서 ETAX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이용한 세금납부 건수가 급증하여 2006년에는 전체 세금납부 건수 중 10%를 처음으로 초과(11.7%)하였고 2008년에는 20% 초과(22.2%), 2009년에는 31.2%를 넘는 등 해마다 온라인을 이용하는 지방세 납부시민들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의 ETAX 홈페이지는 이용시민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회원가입이나 메뉴간 이동 없이도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만으로 초기 화면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즉시 온라인 납부가 가능하다. 서울시의 ETAX 홈페이지에서는 지방세뿐만 아니라 각종 과태료나 상수도 요금 등 서울시에 납부하는 모든 세입금을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하는 방법도 다양하다. 은행계좌의 잔액으로 납부하는 현금납부 외에도 수수료 부담 없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금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납세자가 원하는 금액만큼만 선택하여 일부만 납부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또한 신용카드의 한도가 초과되어 세금 등의 납부

에 불편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여러 장의 카드를 이용하거나, 카드와 현금으로 나누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납세시민의 편익을 증진시켰다. 이러한 서비스는 현재 위택스 서비스에서는 제공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는 위택스 서비스에서도 분할하여 납부하는 방법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ETAX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방세 온라인 납부와 전자영수증 평생보관 외에 지방세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과오납 환부금 유무확인, 모범납세자 증명서 발급과 복잡하고 다양한 지방세 법령, 판례, 사례 등의 정보를 알기 쉽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는 시민고객이 과세관청을 방문하여 해결해야 했던 지방세 관련 민원사항이 온라인 공간에서도 가능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ETAX 홈페이지를 통하여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복잡한 절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불편함을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었다. 온라인을 통해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납세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심사결정을 통보받을 수 있어 굳이 과세관청을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도 없어졌다. 또한 납세자가 ETAX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지방세 환급금을 간편하게 상시 조회할 수 있으며, 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상에서 언제든지 지급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서울시는 ETAX 홈페이지를 통해 외국인 납세자를 위한 영문 홈페이지도 동시에 서비스한다. 그 동안 오프라인을 통한 외국인 납세서비스 외에 본격적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이는 외국인을 행복한 시민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거주하는 외국인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돕기 위해 세금고지서와 함께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등 4개 외국어로 제작된 외국어 안내문을 동시에 송달하는 서비스를 시행해오고 있으며, 2006년도부터 4년간 총 10만 3천

명의 외국인 납세자에게 외국어 안내문을 송달하였다. ETAX 영문 홈페이지 서비스를 통하여 외국인 납세자가 내국인과 차별 없이 서울시의 다양하고 편리한 납세편의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외국인 납세자의 불편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새로운 ETAX 홈페이지에는 「나만의 ETAX」를 통하여 회원 개개인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방세 부과 및 납부현황, 과납 환급금 현황, 예약·자동이체 현황, 전자고지함,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현황, 전자영수증 보관함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ETAX 홈페이지 회원의 이용편익을 극대화 하였다.

2010년 3월 현재 ETAX 홈페이지 회원은 약 107만명으로써 570만명에 달하는 연간 납세자의 약 18.7%에 이르고 있고, 온라인을 통한 지방세 납부건수는 연간 6,137천건 금액은 32,216억원(2009년)으로써 전체의 30%에 육박하고 있으며, 향후 계속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취득세 인터넷 신고납부서비스는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과 연동되어 있어, 취·등록세 신고납부를 위해 취득가격 등 별도의 자료 입력 없이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에서 부여한 신고필증일련번호 입력만으로 편리하게 취·등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부동산과 관련된 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이전, 경매신청, 변경, 말소 등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 신고납부, 법인 설립·자본금 증가·법인의 본점·주사무소의 이전 등 법인 관련 등기에 대한 등록세 신고납부 및 기타 상호등기·선박등기·항공기 등록·공장 및 광업재단 등기에 대한 등록세 신고납부도 관할구청과 금융기관 방문 없이 신고 납부할 수 있다. 향후에는 취득세 신고납부에서 등기까지 인터넷으로 가능한 시스템 연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서울시는 취득세 인터넷 신고납부서비스를 ‘국민주택채권 전자매입시스템’과 ‘부동산인터넷등기시스템’ 등 외부 시스템과의 연계를 추진하여 시민고객이 부동산 취득에서 등기완료까지 인터넷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재는 개인간 유상 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공동주택과 토지에 한해서 취득 인터넷 신고납부가 가능하나, 앞으로는 과세표준 계산이 복잡한 상가건물, 일반주택 등에 대하여도 인터넷 신고납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⁸⁶⁾

2. 국세 통합 신고·납부 시스템 홈택스(HomeTAX)

국세의 경우에도 전통적으로 국고수납대리점에 납세자가 방문하여 납부하는 방식이었으나, 2000년대 들어 전자납부가 도입되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전자납부가 점차 확산되는 이유는 홈택스서비스(HTS)의 제공에 따라 납세자의 납세편의가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홈택스서비스(HTS)란 납세자가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편리하게 세무신고, 고지, 납부, 민원증명발급, 과세자료제출 등 모든 국세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국세청의 세무서비스를 말한다. 홈택스서비스(HTS)의 시행으로 국세 통합시스템과 인터넷의 연결에 의하여 웹사이트를 통한 신속한 세무정보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졌다. 즉, 인터넷을 통해 실제 세무서를 방문한 것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홈페이지가 구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전자세무신고시스템 도입, 전산매체신고 확대, 인터넷으로 신고서 작성방법안내 및 세무관련 서식제공, 전산출력과세자료 축소 및 처리방법 등의 개선을 가능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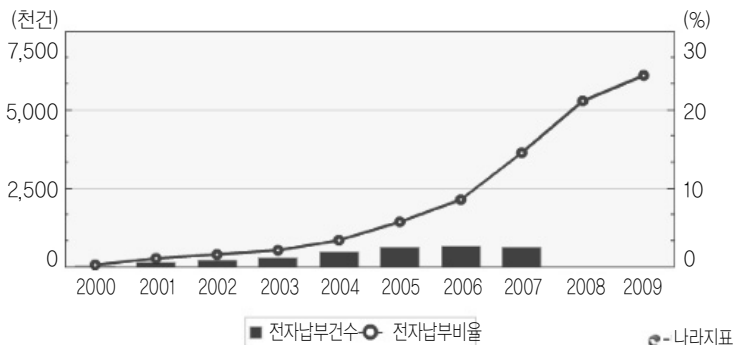
1997년 1월의 국세통합시스템(TIS : Tax Integrated System)의 출

86)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2011. 3. 2.

현 이후부터 실질적인 조세행정의 전산화가 실행되어 국세통합시스템 내의 전자신고 부문은 2000년 7월을 시작으로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시범적 실행이 되었다. 그리고 2002년 4월부터 전자신고 활용을 세무대리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다양한 납세업무 처리할 수 있는 홈택스 서비스가 부가가치세와 원천세, 주세, 특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교통세 및 관련 부가세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2002년 11월부터는 세무대리인이 아닌 납세자에 의하여 직접적인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2003년 11월부터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분야의 개인별 홈택스 서비스(HTS) 신고가 가능해졌으며, 2004년 5월부터는 종합소득세 신고까지도 가능하게 되었다. 현재에는 종합소득세, 사업장현황신고, 원천징수, 부가가치세, 법인세, 해외금융계좌신고,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전자신고도 가능하다.

이러한 홈택스 서비스에 따라 국세에 대한 전자납부 건수 추이는 상승일로에 있다.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에서도 지속적인 개선을 통하여 홈택스 서비스의 신고·납부 편의성을 참고하여 전자납부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 국세 전자납부 건수(비율) 추이



출처 : 국세청(내부행정자료), e-나라지표.

총납부대비 전자납부의 현황에서도 전자납부 건수에서나 금액적으로 국세의 전자납부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특히 전자납부비율이 25%를 넘어서고 있으며, 이후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6〉 국세 총납부 대비 전자납부 현황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총납부	건수	14,053	14,485	15,123	15,414	16,230	18,125	18,853	19,192
	금액	99.3	111.6	114.2	124.4	133.4	156.5	163.8	159.6
전자납부	건수	217	303	507	879	1,386	2,629	3,980	4,678
	금액	3	4.8	7.8	19	26.1	36.7	41.5	42.5
전자납부 비율 (%)	건수	1.55	2.09	3.35	5.7	8.53	14.5	21.11	24.37
	금액	3.01	4.28	6.83	15.23	19.53	23.47	25.32	26.64

출처 : 국세청(내부행정자료), e-나라지표.

또한, 국세청은 그동안 PC로만 이용이 가능했던 홈택스와 국세법령정보 조회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12년부터 스마트폰 서비스를 제공한다. 홈택스 모바일은 민원증명 신청 및 처리결과 확인, 양도소득세·증여세 자동계산, 국세환급금과 세금포인트 조회 등을 서비스하며, 민원증명 신청, 국세환급금 조회 등의 서비스는 개인정보 확인이 필요하므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홈택스에 가입한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다. 민원증명 신청의 경우, 신청 즉시 스마트폰으로 처리결과와 발급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으로 확인한 발급번호를 민원인이 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금융기관 등에 통보하면 해당기관은 홈택스를 통해 민원인의 증명서를 조회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 서비스외에도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영수증을 인터넷(www.yesone.go.kr)에서 조회·출력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증명자료를 국세청이 대신하여 은행, 학교, 병의원 등 영수증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하여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신고 시 소득공제신고서에 홈페이지에서 출력 및 다운로드한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2009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설문조사⁸⁷⁾에 의하면 매우 만족하는 이용자와 만족하는 이용자가 2008년 귀속분은 77.1%, 2007년 귀속분은 61%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불만족, 매우 불만족하는 이용자는 2008년 귀속분은 15.1%, 2007년 귀속분은 8.6%에 불과하다. 2007년 귀속분에 비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하여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였던 이용자(보통 30.4%)들이 만족하는 것으로 인식이 좋아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이용자도 증가하였으므로 간소화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좋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불만족하는 이용자의 경우에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보아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매우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이용자도 증가한 것으로 보아 지속적인 개선 없이는 이용자의 서비스 인식에 대하여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표 17〉 연말정산 간소화 만족도

년도	이용자수		항 목 별									
			매우만족		만 족		보 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2008	1,748	100.0	812	46.5	535	30.6	137	7.8	92	5.3	172	9.8
2007	1,044	100.0	249	23.9	387	37.1	318	30.4	63	6.0	27	2.6

87) 국세청, 보도자료, 2009. 3. 6.

특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이용이 편리한 항목은 2008년 귀속분은 의료비와 관련된 항목으로 나타났으며, 2007년 귀속분은 신용카드에 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험료, 연금저축, 교육비와 같이 단일 또는 일부 대상에 지출하는 항목이 아니라 의료비와 신용카드의 경우 여러 대상에 지출한 항목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의료기관과 신용카드 발급 회사의 경우에는 개인별로 다수의 지출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표 18〉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편리 항목

(명, %)

년도	이용자수		항 목 별											
			보험료		연금저축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없 음	
2008	1,748	100.0	165	9.4	121	6.9	97	5.5	631	36.1	595	34.1	139	8.0
2007	1,044	100.0	152	14.6	65	6.2	48	4.6	199	19.1	580	55.5	-	-

연말정산 불만족 항목에서는 2007년 귀속분의 경우 의료비 항목이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2008년에는 개선되어 17.1%로 줄어들었다. 또한, 2008년 귀속분의 경우에는 서비스 불만족 항목이 없다는 응답이 57.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9〉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불만족 항목

(명, %)

년도	이용자수		항 목 별											
			보험료		연금저축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없 음	
2008	1,748	100.0	52	3.0	163	9.3	163	9.3	300	17.1	69	4.0	1,001	57.3
2007	1,044	100.0	51	4.9	102	9.8	81	7.8	444	42.5	57	5.4	309	2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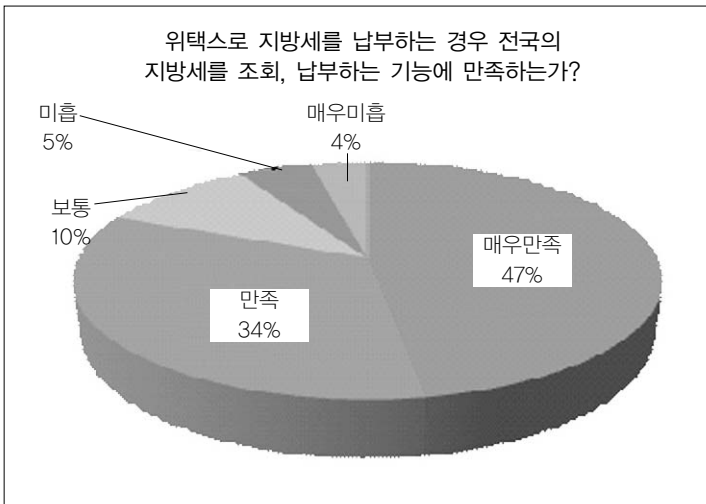
제4절 온라인 납부시스템에 대한 이용자 인식과 개선방안

1. 지방세 납부체계 선진화 관련 만족도

위택스 홈페이지에는 지방세 납부체계 선진화를 위한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설문조사가 2011년 12월 27일부터 29일까지 이루어졌다. 설문에 따른 만족도 조사에는 1,437명이 참여하였다.

각 설문에 따른 응답은 다음과 같다.

① 위택스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 전국의 지방세를 조회·납부하는 기능에 만족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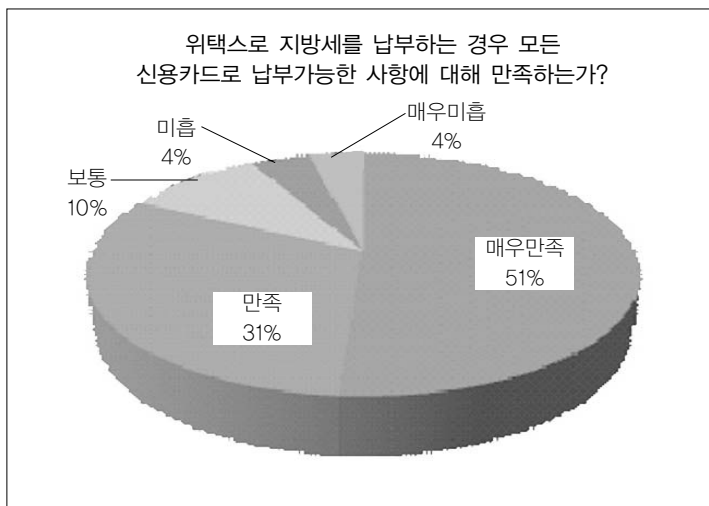


위택스를 통하여 전국의 지방세를 조회·납부하는 기능에 대하여 매우 만족하는 이용자는 681명으로 47.4%가 응답하였으며, 만족하는 이용자의 경우에는 485명으로 33.8%가 응답하였다. 전체 응답자 중에서 81.2%가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이용자는 147명으로 10.2%에 해당하였다. 그러나 미흡하다고 응답

한 이용자는 71명으로 4.9%, 매우 미흡하다고 응답한 이용자는 53명으로 3.7%에 해당하였다.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응답한 이용자는 8.6%로 만족하다고 응답한 이용자 81.2%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이다.

지방세 납부체계 선진화에 따른 만족도에서 위택스를 통하여 전국의 지방세를 조회·납부하는 기능은 전반적으로 이용자들의 납세편의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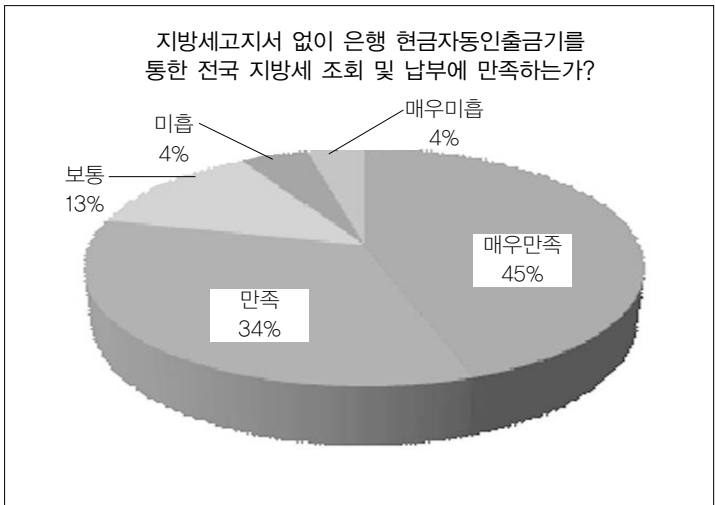
② 위택스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한 사항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위택스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한 기능에 대하여는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자는 735명으로 51.1%, 만족한다는 응답자는 450명으로 31.3%에 해당하였다. 이는 전체 응답자 중 82.4%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위택스를 통하여 전국의 지방세를 조회·납부하는 기능과 같이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기능에 대하여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이용자는 138명으로 9.6%에 해당하였다. 미흡하다고 응답한 이용자는 60명으로 4.2%였으며, 매우 미

흡하다고 응답한 이용자는 54명으로 3.8%에 해당하였다. 위택스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한 기능에 불만족하는 이용자는 8.0%로 만족하는 이용자 82.4%에 비하면 역시 낮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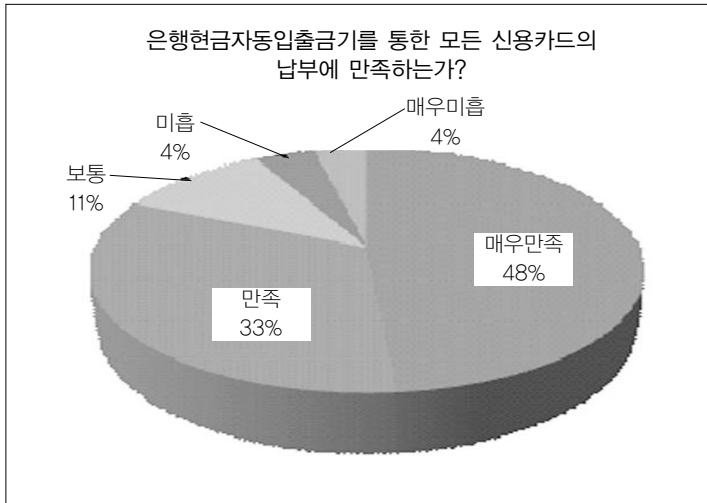
③ 지방세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 자동입출금기를 통한 전국 지방세 조회 및 납부에 만족하십니까?



지방세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 자동입출금기를 통한 전국 지방세 조회 및 납부에 만족하는지 여부에서는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643명으로 44.7%였으며, 만족한다는 응답자의 경우에는 33.8%에 해당하였다. 이는 전체 응답자의 78.5%에 해당하는 것으로 앞서 위택스의 모든 지방세 조회·납부 기능과 모든 신용카드 납부에 비하여 약간 낮은 수치이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이용자의 경우에는 184명으로 12.8%로 나타났다. 미흡하다고 응답한 이용자는 66명으로 4.6%였으며, 매우 미흡하다고 응답한 이용자는 58명으로 4%에 해당한다.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응

답한 이용자는 8.6%로 앞선 설문의 응답자와 비슷한 수치이다.

④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한 모든 신용카드 납부에 만족하십니까?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한 모든 신용카드 납부에 만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697명으로 48.5%에 해당하였으며, 만족한다는 응답자는 475명으로 33.1%에 해당하였다. 전반적으로 만족하다는 응답자는 총 81.6%로 나타났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이용자는 152명으로 10.6%에 해당하였으며, 미흡하다는 응답자는 60명으로 4.2%, 매우 미흡하다는 응답자는 53명으로 3.7%에 해당하였다.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응답자는 7.9%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만족하다는 응답자 81.6%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이상의 지방세 납부체계 선진화를 위한 이용자들의 설문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위택스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 전국의 지방세를 조회·납부

하는 기능에는 81%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나 전국의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위택스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한 사항에는 82%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신용카드에 제한이 있어 일부 신용카드만 가능하였던 것에서 모든 신용카드로 확대한 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방세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자동인출기를 통해 전국 지방세의 조회 및 납부를 할 수 있는 기능에는 79%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위택스 서비스에 대하여는 80%가 넘는 만족도에 비하면 다소 낮은 수치이나 상당수가 OCR 고지서 없이 납부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 OCR 고지서에 익숙한 납세자들이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에 대하여 아직은 적응기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고령의 세대에서는 OCR 고지서에 의한 납부가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한 서비스에는 82%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하여 쉽게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에 대하여 상당수가 만족하고 있다.

2. 납부시스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방세 납부체계 선진화에 따른 납세자의 만족도는 설문조사와 같이 상당수가 대부분의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존의 불편한 부분에 대한 점진적인 개선을 통하여 새로운 납부시스템에 대하여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현행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만족도 조사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납세자들의 경우 기존의 OCR 고지서가 익숙해서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는데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납세자들에게 편리한 전자고지 서비스를 계속 개발하여 종이통지도 점차 줄여나가되 일부 노년층에 대한 배려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납세자에 대한 인터넷 납부에 대한 유인제도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의 징수 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도 인터넷 납부에 대한 여러 가지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각 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특화 납부서비스⁸⁸⁾를 제공하고는 있으나 통합적인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세액공제 형태로 직접적인 유인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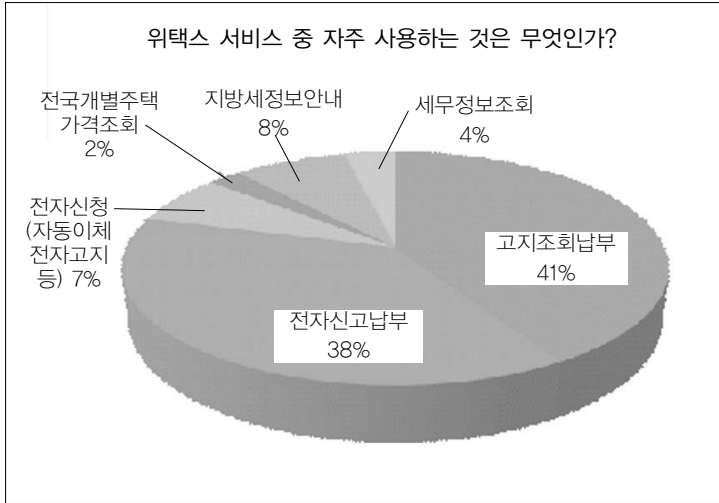
셋째, 신용카드 결제 후 신용카드 납부취소의 절차가 지원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는 민원인이 직접 카드사에 문의하여 해결하여야 하는데 따르는 불편함이 있다. 그러나 납부 후 이를 취소하여야 하는데는 조세의 특성상 무리가 있으나 납부취소가 아닌 변경절차는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고액납부의 경우 여러 납부매체로 납부가 불가능하다. 분납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납부매체를 이용하여 분할납부하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등으로 고액납부시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95) 예를 들어 가상계좌납부, 텔레뱅킹납부, 휴대폰 소액결제시스템, 카드포인트납부와 같은 서비스가 자치단체별로 특화되어 운영하였다.

다섯째, 인터넷 납부시스템 환경이 일부의 기능에 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위택스 서비스 중 이용자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것은 고지조회·납부와 전자신고·납부의 기능에 편중되어 있다. <그림 4>에서와 같이 위택스 이용 서비스 조사의 결과 총 4,624명의 응답자(2개 항목 선택 설문) 중 고지조회·납부를 선택한 응답자가 3,815명으로 41.3%를 차지하였으며, 전자신고·납부를 선택한 응답자가 3,516명으로 38%에 해당하였다. 응답자의 대부분이 위택스 서비스 중 고지조회·납부와 전자신고·납부에 편중되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고지조회·납부와 전자신고·납부가 위택스 서비스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기에는 하나 다른 서비스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납세자들이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환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위택스의 다른 서비스인 전자신청(자동이체, 대행인, 과오납), 전국개별주택가격조회, 지방세정보안내, 세무정보조회와 같은 서비스 항목의 경우 응답자는 각각 6.8%, 2.3%, 7.9%, 3.6%로 나타나 이용비율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으므로 점차 이에 대한 서비스 인식을 높여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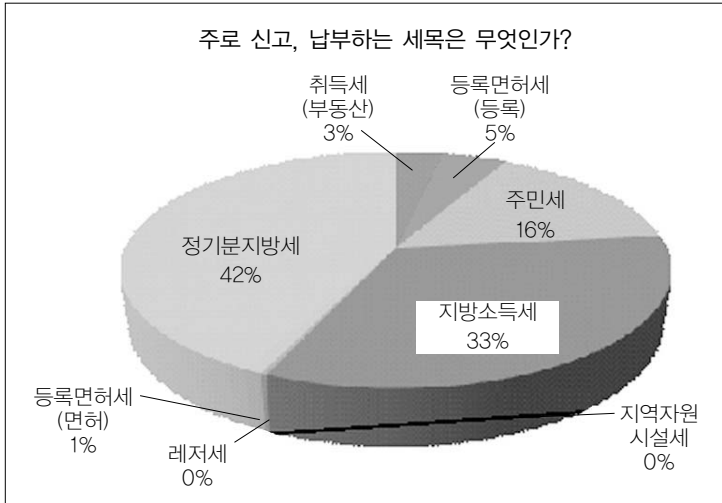
〈그림 4〉 위택스 이용 서비스 조사⁸⁹⁾

또한 주로 신고·납부하는 세목의 경우에도 정기분 지방세(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에만 편중되어 있다. 다른 세목의 경우에도 위택스를 통한 신고·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물론 세목별로 신고·납부하는데 인터넷 납부 시스템 이용에 차이는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종합적인 인터넷 납부 시스템으로 정착하기 위하여는 가능한 모든 세목에 대하여 인터넷 신고·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목별 부과 방법과 납세의무에 따라 신고·납부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나 모든 세목에 대하여 신고 또는 납부가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이에 대하여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96) 위택스 서비스 만족도 조사, 2011. 10. 21 ~ 2011. 11. 30.

〈그림 5〉 위택스 주요 신고·납부 세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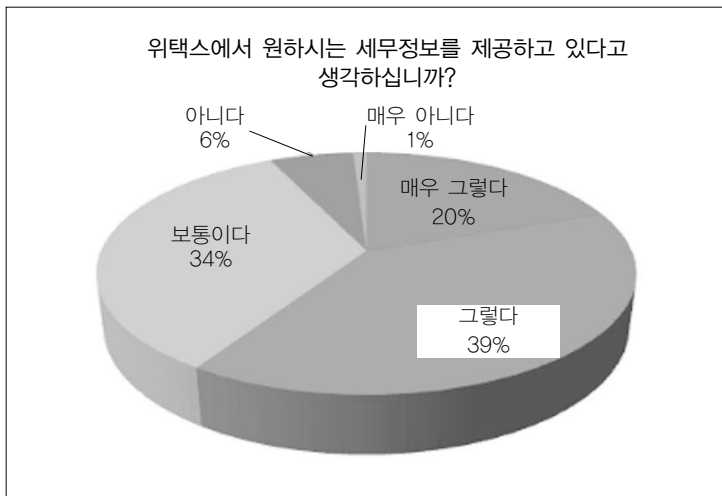


주로 신고·납부하는 세목의 경우 총 응답자 4,624명 중 1,959명이 정기분 지방세(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로 응답하여 42.4%를 차지하였으며, 지방소득세가 1,531명이 응답하여 33.1%로 나타났다. 주민세의 경우에는 717명으로 15.5%로 나타났다. 반면에 부동산과 관련된 취득세의 경우에는 153명으로 3.3%, 등록과 관련된 등록면허세의 경우에는 210명으로 4.5%,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13명으로 0.3%, 레저세의 경우에는 1명으로 나타났으며,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경우에는 40명으로 0.9%에 해당하였다. 즉, 일부 세목에 대하여 편중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여섯째, 위택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세무정보가 원하는 정보인지 여부에 대하여 많은 응답자가 유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위택스의 주요 기능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지방세와 관련된 세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그러한 만족도에 대하여 유보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응답자 중 만족하는 이용자가 59.1%로 나타나기는 하나 보통이라고 응답한 이용자도 34%에 해당한다. 위택스

서비스에 대하여 대부분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세무정보와 관련된 서비스의 경우에는 만족도가 많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7%로 낮기는 하지만, 만족도에 대하여 보통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관심정보가 무엇인지 확인하여 이에 대한 요구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림 6〉 위택스 세무정보 제공 만족도



마지막으로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스마트폰 모바일 서비스와 같은 납세자 편의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모든 지방세 관련 업무를 모바일 서비스로 제공할 수는 없지만 이용 빈도 등을 고려하여 고지조 회 서비스와 같이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앞서 분석한 것처럼 현재 일부 기능에만 한정되어 개선이 필요한 위택스 서비스 중 모바일 서비스에서 가장 유용하게 제공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세무정보와 관련된 서비스이다.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통하여 위택스에서 제공하는 세무정보들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제5장 요약 및 정책제언

2011년부터 개편된 지방세법의 분법화와 세목의 간소화에 따라 복잡한 지방세의 체계가 정리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지방세제상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세 과세표준 양성화와 납세절차의 편의라는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세제운영상 2011. 1. 1.에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라 형식적인 분법화와 세목의 간소화는 이루어졌으나, 근본적으로 제기되었던 문제인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은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지방정부의 비중이 중앙정부의 비중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지방정부의 경우에는 그 지출규모와 수입규모가 상당히 불일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징수와 체납액에 대한 정리 실적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과년도수입액에 대한 징수액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시급한 문제이다. 또한, 지방재정 약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과년도의 체납액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셋째, 중앙정부의 정책목표를 위하여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자주 이용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지방세의 세원이 감소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의 실효성은 그다지 많지 않으면서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지방정부의 재정력에 비하여 지나치게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기존의 조세특례제한법에 여전히 남아 있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에 관한 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시키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입법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산권의 원시취득 및 간주취득에 따른 과세표준을 확정하기 위하여는 복잡한 회계적 계산과 세법의 적용과정을 거치게 됨에 따

라 납세자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게 된다.

2011년 지방세법이 새롭게 개편되었으나 아직은 지방세법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의 개선에 있어 장기간 소요되는 지방세제의 문제점보다는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개선될 수 있는 지방세제의 개편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면에서 지방재정의 시급한 문제인 재정악화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과세표준의 양성화와 납세편의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방재정 악화를 막기 위하여 국세와의 불균형, 지방세 징수 및 체납 정리 실적과 같이 고질적인 지방세제의 문제보다 과세표준의 양성화와 납세자의 납부 편의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개편될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과세표준의 양성화를 위한 지방세제 문제점과 개편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시가표준액의 결정주체가 복잡하고 상이하게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납세자의 경우에는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문제를 제기함에 있어 그 대상을 파악하기 힘들게 된다. 현재로서는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세율과 함께 세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표준의 운영을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 지방세의 전체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과세표준의 결정권한과 공시주체를 단일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지방세 과세표준의 결정권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으로 하고, 공시주체와 이의제기도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된다.

둘째,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의 시각에서 볼 때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강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정으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

배된다. 따라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시가표준액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

셋째, 과세표준의 현실화는 공평과세의 측면에서는 타당하나 급격한 과세표준의 인상은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일으킬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단계적인 과세표준 양성화가 필요할 것이다. 과세표준이 조정 인상될 경우에는 단계적인 조정의 원칙에 따라 점진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거나, 합리적인 세율의 조정이 필요하다.

넷째, 지방세법상 토지와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공시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비주거용 부동산의 건축물은 시장·군수가 원가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다. 비주거용 일반 건물도 시가를 반영한 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과세표준액의 적용 방법을 통일시켜야 할 것이다. 부동산 별로 과세표준의 산정 차이로 과세형평성이 저해될 수 있다. 따라서 일반건물의 경우에도 시가를 반영한 과세표준액을 공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어느 비용을 취득가격에 포함시킬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는 것 보다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여부에 따라 달리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할부·연부이자,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명확한 세법상의 규정을 두는 것이 옳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매매, 교환 등 실제의 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에 근거하여 과세표준의 산출이 가능하지만, 대형 건축물의 신축으로 인한 취득과 같이 원시취득의 경우에는 취득가액 계산에 있어 회계기준 및 관련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전문적이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신축된 대형 건축물이나 임대법인의 과점주주 취득 등과 같이 과세표준이 크고 그 계산과정이 복잡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

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신축 건축물과 같은 원시취득의 경우에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시가산정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나 현행 규정과 같이 원시취득에 대하여 현실적인 취득가액을 원가방식으로 인정하는 체제에서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을 원시취득 및 간주취득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신고납부시 세무사와 같은 전문가의 사전검증을 받아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한 지방세제 납부시스템의 문제점과 개편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납세자들의 경우 기존의 OCR 고지서가 익숙해서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는데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납세자들에게 편리한 전자고지 서비스를 계속 개발하여 종이통지도 점차 줄여나가되 일부 노년층에 대한 배려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납세자에 대한 인터넷 납부에 대한 유인제도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의 징수 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도 인터넷 납부에 대한 여러 가지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각 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특화 납부서비스를 제공하고는 있으나 통합적인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세액공제 형태로 직접적인 유인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신용카드 결제 후 신용카드 납부취소의 절차가 지원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는 민원인이 직접 카드사에 문의하여 해결하여야 하는데 따르는 불편함이 있다. 그러나 납부 후 이를 취소하여야 하는데는 조세의 특성상 무리가 있으나 납부취소가 아닌 변경절차는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고액납부의 경우 여러 납부매체로 납부가 불가능하다. 분납신청

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납부매체를 이용하여 분할납부하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등으로 고액납부시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섯째, 인터넷 납부시스템 환경이 일부의 기능에 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택스 서비스 중 이용자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것은 고지 조회·납부와 전자신고·납부의 기능에 편중되어 있다. 다른 서비스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납세자들이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환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비용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점차 이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을 높여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로 신고·납부하는 세목의 경우에도 정기분 지방세(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에만 편중되어 있다. 물론 세목별로 신고·납부하는데 인터넷 납부 시스템 이용에 차이는 존재할 수 있으나, 다른 세목의 경우에도 위택스를 통한 신고·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여섯째, 위택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세무정보가 원하는 정보인지 여부에 대하여 많은 응답자가 유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위택스의 주요 기능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지방세와 관련된 세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그러한 만족도에 대하여 유보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위택스 서비스에 대하여 대부분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세무정보와 관련된 서비스의 경우에는 만족도가 많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만족도에 대하여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응답자의 관심정보가 무엇인지 확인하여 이에 대한 요구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스마트폰 모바일 서비스와 같

은 납세자 편의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모든 지방세 관련 업무를 모바일 서비스로 제공할 수는 없지만 이용 빈도 등을 고려하여 고지조회 서비스와 같이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앞서 분석한 것처럼 현재 일부 기능에만 한정되어 개선이 필요한 위택스 서비스 중 모바일 서비스에서 가장 유용하게 제공될 것으로 보이는 서비스의 경우 미흡한 인식의 확대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 국회예산정책처, 「지방세의 현황과 과제」, 2011.
- 국중호, 「주요국의 조세제도-일본편」, 한국조세연구원, 2009.
- 김대영·김성주, 「통합 취득세의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1.
- 김백영,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취득 당시의 가액”, 「세무사」 제15권 제2호, 1997.
- 김완석, “개별공시지가의 행정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1997.
- 김완석, 「조세법 체계의 개편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6.
- 노영훈, 「부동산관련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원칙 및 근본적 한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4.
- 노영훈, 「실지거래가격 신고에 따른 적정세율 추정 및 제도적 실행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3.
- 박성철, “2011. 1. 1 시행 새로운 지방세 법제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2011.
- 박완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와 과표현실화”, 「지방세」 2003-4, 2003.
- 박정수, “부동산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 현실화방안 연구”, 「세무학연구」 제18권 제2호, 2001.
- 박정수, 「주요국의 조세제도 - 영국편」, 한국조세연구원, 2009.
- 박 훈, “지방세법 체계의 전문화 방안-지방세법 체계의 구체적인 전문화방안”, 「지방세」 제4호, 2007.

- 유상호, “일반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체계의 개선방안”, 「토지공법 연구」, 제44집, 2009.
- 이기범, “인터넷 지방세종합서비스 시스템 위택스(WeTax)”, 「지역정보 화」 제51호, 2008.
- 이영희 · 김대영, 「재정분권과 지방소비 · 소득세」, 박영사, 2009.
- 이종규 · 변창흠, 「지방세 건물과표 개선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0.
- 이희봉, “지방세 분법의 성과와 의의”, 「지방재정과 지방세」 제27호, 2010.
- 전동훈, “지방세 과세표준 체계의 현황과 발전방향”, 「부동산포커스」 제 32호, 2011.
- 전동훈, “지방세법상 사실상의 취득가액 적용 법리”, 「지방재정과 지방 세」 제14권, 2009.
- 장근호, 「주요국의 조세제도 - 미국편(II)」, 한국조세연구원, 2011.
- 정지선,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 결정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 구」 10-2, 2004.
- 차강석 · 최한철, 「지방세해설」, 조세신보사, 2012.
- 좌명근, 「세법학총론」, 세경사, 2007.
- 최병호 · 이근재 · 최성희, “재산세 공동과세의 재원배분 효과”, 「지방정 부연구」 13-4, 2010.
- 최병호 · 정중필, “서울시 자치구간 재산세 공동세 제도 추진방안 분석 과 대안 모색방안”, 「지방정부연구」 11-2, 2007.
- 최향도, “재산세공동과세제도의 재정형평화 효과에 관한 연구-서울특 별시 사례를 중심으로”, 동국대 박사학위 논문, 2011.
- 행정안전부, “지방세 선진화 · 전문화를 위한 지방세제 개편”, 2010.

■ 研究叢書案内

- ① 資本市場 育成을 위한 租稅政策方向
宣 炳 完 1987. 3
李 愚 澤
- ② 特別消費稅制의 合理的 改善方向
金 完 淳 1987. 3
金 完 石
- ③ 租稅確定의 適正節次 保障에 관한 研究
崔 明 根 1988. 2
金 冕 圭
李 承 文
- ④ 附加價值稅의 政策課題와 改善方向
崔 洸 1988. 3
李 愚 澤
- ⑤ 租稅審判制度의 合理的 改善方案
李 哲 松 1988. 4
金 完 石
- ⑥ 韓國稅制의 合理化에 관한 研究
金 東 建 外 1988. 7
- ⑦ 稅務士制度의 發展方向
申 東 雲 外 1988. 10

⑧ 附加價值稅 納付稅額計算과 課稅特例制度的 改善에 관한 研究

崔 明 根 外 1991. 11

⑨ 土地稅制의 長期的 改編方案에 관한 研究

金 東 建 外 1993. 8

⑩ 相續課稅의 制度改善에 관한 研究

李 鎭 淳 1994. 10

李 哲 松

⑪ 租稅行政의 適正節次와 合理化에 관한 研究

李 愚 澤 1995. 3

⑫ 租稅制裁法制的 再整備

崔 明 根 1995. 3

⑬ 財産課稅行政의 民主的 發展方向에 관한 研究

金 完 石 1995. 3

⑭ 納稅者의 權益保障 提高에 관한 研究

崔 明 根 1996. 2

⑮ 移轉價格稅制와 多國籍企業의 防禦戰略

崔 鏞 善 1996. 3

孫 閏 煥

■ 研究叢書案内

- [16] 所得稅制度 및 行政의 改善에 관한 研究
金 完 石 1996. 9
- [17] 法人稅 課稅體系의 本質的 改編에 관한 研究
李 愚 澤 1996. 10
- [18] 稅務士制度의 課題와 試驗制度의 改善에 관한 研究
崔 明 根 1996. 12
- [19] 個別公示地價의 行政審判制度 改善에 관한 研究
金 完 石 1997. 3
- [20] 稅務士의 租稅訴訟代理適格性에 관한 研究
李 哲 松 1997. 12
- [21] 稅務法人制度의 改善에 관한 研究
金 完 石 1998. 3
- [22] 稅務會計의 定立과 企業會計와의 關係에 관한 研究
李 愚 澤 1998. 3
- [23] 申告納付稅制의 評價와 制度改善에 관한 研究
徐 熙 烈 1998. 3
- [24] 우리나라 企業會計制度의 改善方向
高 承 禧 1999. 3

[25] 企業合併分割의 課稅體系에 관한 研究

李 愚 澤 1999. 3

[26] 聯結納稅制度의 導入方案과 政策課題에 관한 研究

李 愚 澤 2000. 3

[27] 納稅環境의 改善에 관한 研究

金 完 石 2000. 3

[28] 프랑스 租稅節次法 研究

安 昌 湍 2001. 1

[29] 稅效果會計論 研究

高 承 禧 2001. 3

[30] 오스트리아 稅務士制度에 관한 研究

金 完 石 2001. 3

李 鍾 永

[31] 리스會計와 리스稅務에 관한 研究

李 愚 澤 2001. 3

[32] 派生商品關聯去來의 課稅에 관한 研究

玉 武 錫 2001. 4

[33] 推計課稅方法에 관한 研究

金 完 石 2001. 4

■ 研究叢書案内

- [34] 附加價值稅 改編方案 研究
安 昌 湍 2002. 3
- [35] 營業權(企業價值)의 會計와 稅務에 관한 研究
李 愚 澤 2002. 3
- [36] 負擔金 관련 行政審判代理業務의 擔當主體에 관한 研究
金 相 憲 2002. 3
- [37] 企業年金의 會計와 稅務
高 承 禧 2002. 3
- [38] 不動產 관련 地方稅制의 改善에 관한 研究
金 完 石 2003. 3
- [39] 綠色申告 納稅制度 導入에 관한 研究
稅務士制度改善推進委員會 2003. 3
綠色申告制度研究委員會
- [40] 電子商去來時代に 對應한 課稅體系整備와 稅務서비스 改善
李 在 奎 2003. 3
皇甫 烈
- [41] 稅務서비스 市場開放에 대한 稅務代理業界의 對應
高 俊 誠 2003. 3
- [42] 稅法상 企業會計 準用 規定의 問題点과 改編方案에 관한 研究
(法人稅法 第43條의 立法的 誤謬와 改編方案을 中心으로)
李 愚 澤 2003. 11

43 納稅組合의 效率的 管理改善 方案

金 雄 熙 2005. 3

李 基 煜

44 租稅法令 解釋情報의 體系的 生産 및 傳達 方案

李 基 煜 2005. 7

金 雄 熙

45 新經濟時代 우리나라 株式評價 및 課稅體系的 改編方案

李 愚 澤 2008. 7

金 完 鎰

46 EITC(勤勞獎勵稅制)導入의 先決課題에 관한 研究

俞 景 文 2008. 7

47 租稅法の 憲法合致的 立法論에 관한 研究

李 銓 午 2008. 8

48 賣買事例價額의 時價適用 및 이에 따른 課稅體系的 改編方案

朴 孔 卓 2008. 8

49 우리나라 記帳擴大方案 研究

朴 性 培 2008. 8

50 租稅行政審判前置制度에 관한 研究

蔡 羽 奭 2008. 8

51 미술시장의 활성화 및 세제지원방안 연구

安 昌 湍 2009. 1

■ 研究叢書案内

- [52] 조세측면에서의 기업지배구조와 세무사의 역할 증대
가능성에 관한 연구
徐 熙 烈 2009. 1
- [53]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세 과세체계에 관한 연구
金 淀 植 2009. 1
朴 薰
- [54] 수증재산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의 경합과 그 조정에 관한 연구
金 完 石 2009. 3
- [55] 현대 조세환경에 위배되는 세무대리·세무대리인·
납세협력비 등 언어의 폐해와 개선방안
李 愚 澤 2009. 10
- [56] 국제회계기준(IFRS)도입이 세무사의 업무영역에 미치는 영향
심 태 섭 2010. 3
김 상 철
서 희 열
- [57]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 윤 성 2010. 4
이 은 자
이 명 근
- [58] 재개발·재건축사업 관련 조세제도에 대한 연구
정 지 선 2010. 4
장 근 호

59 우리나라 가산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 정 식 2010. 4

서 희 열

60 대표자인정상여 소득처분제도의 위험성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윤 석 남 2011. 3

심 충 진

61 각 세법상 부당행위계산규정의 상충관계 해소를 위한 연구

정 지 선 2011. 3

권 오 현

62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제도의 주요 차용개념과 그 범위에 관한 연구

오 기 수 2011. 3

손 장 엽

63 회계 및 각 세법상 수입(수익)의 범위, 인식시기 및 인식방법의
조화·개선에 관한 연구

전 병 욱 2011. 3

최 보 람

64 실질과세원칙에서의 다단계거래 부인에 관한 연구

최 성 근 2012. 3

주 혜 진

65 외부세무조정제도의 효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김 완 석 2012. 3

전 병 욱

■ 研究叢書案内

[66] 성실신고확인제도 시행에 따른 세무사 면책기준 설정연구

안 경 봉 2012. 3

이 동 식

이 은 미

[67] 세무사업무의 국제적 확대방안 연구

옥 무 석 2012. 3

안 창 남

손 순 희

[68] 지방세 과세표준 양성화 및 납세절차상의 편의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정 지 선 2012. 3

정 재 현

① 西獨의 稅務士法에 관한 研究

李 承 文 1987. 2

② 主要國의 法人所得課稅制度

吳 赫 柱 1987. 3

李 愚 澤

李 哲 松

權 海 浩

③ 主要國의 個人所得課稅制度

吳 赫 柱 1988. 3

崔 炳 哲

李 哲 松

權 海 浩

④ 主要國의 相續課稅制度

崔 炳 哲 1989. 3

李 哲 松

權 海 浩

吳 赫 柱

⑤ 主要國의 消費課稅制度

金 文 守 1993. 4

崔 炳 哲

李 哲 松

權 海 浩

■ 研究調查資料案内

〔6〕 獨逸의 稅務代理制度에 관한 研究

金 完 石 1994. 10

李 鍾 永

〔7〕 獨逸의 租稅基本法과 財政法院法

李 愚 澤 1995. 3

張 台 柱

〔8〕 日本의 稅理士制度에 관한 研究

權 海 浩 1995. 6

〔9〕 獨逸會社法

李 炯 珪 1996. 1

〔10〕 獨逸稅務士法

崔 竣 璿 1996. 3

李 承 文

〔11〕 美國의 法人所得課稅制度

朴 胤 浚 1997. 2

〔12〕 獨逸企業의 年次決算會計와 會計監査制度에 관한 研究

金 光 洙 1998. 3

〔13〕 獨逸法人稅法

金 光 洙 1999. 2

〔14〕 獨逸・日本・美國의 稅務士關係法令集

金 裕 燦 外 2003. 3

研 究 報 告 書
第 68 輯 (2012. 3)

지방세 과세표준 양성화 및 납세절차상의
편의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2012年 3月 15日 印刷

2012年 3月 18日 發行

著 者 정 지 선 · 정 재 현

發行人 韓國租稅研究所

發行處 韓國稅務士會

137-870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497-16

電話(代) 587-6021

登錄：1988年 11月 11日(바 1184)

ISBN 979-11-5520-009-4

〈非賣品〉